



I. 투자 동향

- 1. 개요 || 11
- 2. 외국의 대 칠레 투자 동향 || 12
- 3. 한국의 대 칠레 투자 동향 || 26

II. 투자 환경

- 1. 개요 || 33
- 2.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 동향 || 38
- 3. 투자입지 여건 || 41
- 4. 주요 투자 유망분야 || 48
- 5. 투자 시 고려 사항 || 51
- 6. 현지 금융 || 53

III. 투자 방식 및 절차

- 1. 사전 타당성 조사 || 57
- 2. 투자 방식 || 58
- 3. 칠레의 영업형태 || 75
- 4. 기업 형태별 설립 절차 || 77
- 5. 상용 부동산의 임대 || 81

IV. 현지 경영관리

- 1. 초기 경영관리 || 85





2. 일반 수입 통관 절차	87
3. 마케팅 관리	89
4. 인사 및 노무 관리	91
5. 칠레의 조세법	97

V. 철수

1. 개요	107
2. 철수 방법 및 절차	108

VI. 이민과 비자

1. 행정절차	111
2. 이민과 비자의 종류	112
3. 정착 가이드	114

VII.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방안

1. 투자 유망분야	123
2. 칠레 진출기업 성공사례	124
3. 투자 진출 전략	129

VIII. 부록

1. 대 칠레 투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36
2. 칠레 내 주요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현황	145





01

투자 동향

1. 개요

칠레의 역사는 스페인의 Pedro de Valdivia가 1542년, 식민지를 정복하고 산티아고 시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칠레는 스페인군에 완전정복 된 1557년부터 약 200년 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1810년 비로소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그 후 19세기 말까지 아르헨티나와의 조약을 통해 칠레 남부 마젤란 해역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1879년부터 4년간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에 대항한 태평양전쟁을 통해 북부 아타카마 사막을 칠레국토로 편입시키면서 총 연장 4,345km에 달하는 국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정치경제적 불안이 거듭되는 가운데 1974년 피노체트가 집권하면서 칠레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피노체트의 기본 경제정책은 시장개방, 자유경제체제였으며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시장개방 확대 및 시스템 개혁을 논의 중이다.

칠레는 2008년 기준 총 42개국과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실질 평균관세율이 2% 수준인 완전경쟁시장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칠레인들은 칠레가 중남미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크고, 주변 중남미 국가와 칠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세계 광물수요의 증가로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칠레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기 호황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에 비해 한발 앞서 각종 개발사업 및 국가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2. 외국의 대 칠레 투자 동향

2.1 중남미 진출 플랫폼

최근 각국의 자원외교활동 강화 및 중남미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주요 다국적기업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이 강화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통적으로 광산 및 전력, 통신,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칠레는 다국적 기업의 Off-shoring 대상국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중남미 R&D 센터로서의 가능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R&D 센터 유치를 위해 각종 High Tech FDI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American Life Insurance, GE, TNT 등은 칠레에서 글로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대 칠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칠레의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및 칠레를 중심으로 중남미 전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칠레를 투자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칠레 정부는 자국을 중남미 시장의 관문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칠레가 중남미 각국과 맺은 FTA 또는 유사 FTA협정을 활용해 중남미 전체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용이한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주요 투자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 칠레정부는 중남미 투자거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장점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률 및 조세제도를 철폐하고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현재 500여 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이 칠레에 진출해있으며 칠레를 중남미 본부로 활용하여 칠레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진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2 대 칠레 외국인 투자 현황

대 칠레 분야별 외국인 투자는 광산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 밖에 광산업과 관련된 전력, 통신 및 운송 부문의 투자가 중심이 되어왔다. 2003년부터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다수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광산업 및 관련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은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7년 대 칠레 외국인 투자를 살펴보면 총 투자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또한 79% 감소하여 칠레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대 칠레 광업 투자는 전체 투자 유치액의 88%에 해당하는 28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07년 비중은 42.3%,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2006년도의 폭발적인 투자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분석될 수도 있으나 칠레 대형광산의 노후화 및 광물 고갈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대상지가 페루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대 칠레 전체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투자액	4,635,908	1,797,655	3,169,101	1,371,079	64,700,531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 위원회 (CINVER)

〈대 칠레 광산 및 광산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분야/연도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광업	349,636	587,271	1,120,035	314,417	21,174,652
전기,가스,수도	2,193,400	98,208	1,205,461	168,640	12,964,395
교통, 운송	23,911	54,688	171,502	15,741	733,358
커뮤니케이션	1,402,245	514,604	65,076	67,094	6,607,753
하수시스템	134	1,824	0	0	522,644
기타	24,774	29,042	229,067	20,301	1,336,901
총 투자액	3,994,100	1,285,637	2,791,141	586,193	43,339,703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광산 부문을 제외한 대 칠레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매년 1~2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도의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서비스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중심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칠레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국제 금융기업의 중남미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금융기관의 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통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D&S, Cencosud, Falabella와 같은 칠레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중심이다.

그 밖에 임업을 비롯하여 목재, 펄프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 칠레 외국인 투자가 광업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광업부문을 제외한 대 칠레 주요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분야/연도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유통	16,900	2,500	19,055	262,638	1,583,888
금융	11,536	132,594	123,345	249,601	6,615,155
임업	150	7,030	17,330	107,690	373,478
엔지니어링	14,371	55,040	93,159	71,472	733,111
목재, 펄프	82,303	3,965	4,070	23,369	1,198,070
총계	125,260	201,129	256,959	714,770	10,503,702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2.3 광산업 투자 동향

광산업은 대 칠레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1974~2007년까지 총 외국인 투자 누적액 647억 달러 중 3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력, 가스 및 수도분야가 19.9%, 광산 및 광산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칠레 광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칠레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 도입과 신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및 생산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세계 유수의 광산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온 것도 그 원인이다. 그 결과 세계 메이저 광산업체들은 1900년대 초, 이미 칠레시장진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BHP Billiton, Freeport McMoran, Rio Tinto, Antofagasta Mineral, Placer Dome, Anglo American, Barrick, Aur Resource, Mitubishi 등과 같은 세계 메이저 광산기업들이 칠레에서 활동 중이다.

〈2007년 칠레경제의 광산업 비중〉

(단위: %)

항목	비율
총 수출액 중 광산물 비중	64.6
전체 수출액 중 구리 비중	56.3

자료: 칠레중앙은행

이와 같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칠레 광산업은 이미 국가 기반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제 구리거래가격 상승에 힘입어, 광산업은 2007년 기준 전체 국가수출액의 65%를 차지하였다.

〈업종 및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투자분야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농목축업	277	1,156	3,107	734	267,977
임업	150	7,030	17,330	107,690	373,478
어업/양식	2	0	0	11,483	308,228
광업	349,636	587,271	1,120,035	314,417	21,174,652
식품가공	56,234	186,010	65,282	20,226	2,313,188
목재가공	82,303	3,965	4,070	23,369	1,198,070
석유화학	270,946	500	0	7,157	2,928,190
기타 제조	20,571	8,282	21,164	18,705	1,510,689
전기,가스, 수도	2,193,400	98,208	1,205,461	168,640	12,964,395
건설	119,109	7,941	8,923	1,543	1,424,838

투자분야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유통	16,900	2,500	19,055	262,638	1,583,888
교통/운송	23,911	54,688	171,502	15,741	733,358
통신	1,402,245	514,604	65,076	67,094	6,607,753
금융	11,536	132,594	123,345	249,601	6,615,155
보험	49,409	107,000	22,525	10,268	2,104,016
엔지니어링	14,371	55,040	93,159	71,472	733,111
하수, 위생	134	1,824	0	0	522,644
기타서비스	24,774	29,042	229,067	20,301	1,336,901
총계	4,635,908	1,797,655	3,169,101	1,371,079	64,700,531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2.4 제조업 투자

1970년대 이후 칠레정부는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 전략을 유지해옴에 따라 국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칠레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이나 식품 및 목재가공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에 비해 제조업의 투자 매력은 현저히 떨어져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도 주변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칠레 정부 또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 보다는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07년 칠레의 산업별 GDP 구성〉

(단위: %)

순위	분야	비율
1	금융업	17.18
2	제조업	17.06
3	일반서비스업	11.45
4	상업, 호텔, 식당	11.07
5	광업	7.71
6	건설	7.61
7	교통	7.52
8	부동산	5.70
9	공공행정	4.23
10	농림축산업	4.05
11	통신	2.76
12	전기, 가스, 수도	2.51
13	어업	1.15

자료: 칠레 중앙은행

제조업 투자유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및 목재 가공업의 경우, 주로 칠레 주요 생산품인 농·목축업 제품 가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목재 가공업은 제지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2.5 농수산업 및 임업 투자

외국인의 대 칠레 직접투자에서 광업을 제외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8.74%, 1억 1,900만 달러 수준으로 특히 임업 및 어업/양식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임업의 경우 칠레 남부 산림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조림 및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2003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급증하여 약 1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 칠레 어업/양식업 투자 증가의 원인은 칠레 남부 X, XI지역의 연어양식 확대 및 기타 해양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6 투자 제도

칠레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에는 DL600과 Chapter XIV,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DL600이다.

1) D.L. 600 외국인투자규정에 의한 투자

D.L. 600은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경제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에서는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D.L. 600조 규정을 통해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운 외환시장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D.L.600 규정이 발효된 1974년 이후 칠레 외국인 투자의 약 70% 이상이 D.L. 600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 투기성 단기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D.L.600 규정을 통해 투자 자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미화 500만 달러 (고도기술의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 획득 시 250만 달러 이상도 가능)이다.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투자규모, 투자 자본형태, 투자 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해야 한다. 사전 탐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 투자, 투자목적 변경, 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 변경 요인이 발생 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D.L.600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7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 세율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 받으며 해당 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 세제 시스템 하에서는 D.L. 600조가 보장하는 42%의 고정세율보다는 일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일반 조세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고정세율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D.L.600을 통한 투자에 대한 승인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담당하며,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1개월 내에 승인이 난다.

2)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Capítulo XIV)에 의한 투자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규정 제14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D.L. 600규정과 유사하다. 두 방식은 투자액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제14조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1만 달러이다. 제14조를 통한 투자의 경우 D.L.600규정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계약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D.L.600에서 제공하는 조세고정제 또한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D.L.600과 비교할 때 자본금을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D.L.600 vs 외환규정 제14조〉

	D.L.600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
최소투자규모	US\$ 5,000,000	US\$ 10,000
투자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중앙은행에 외화반입 통보
투자금회수	투자개시 1년 후부터 가능	항시 가능
조세제도	일반조세제도 조세고정제도 중 택1	일반조세제도
장점	높은 안정성 (정부와 계약)	자본금회수 용이, 간편 신속한 절차, 높은 효율성

〈칠레의 연도 및 투자형태별 투자유치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DL 600	CHAPTER XIV	총계
2000	3,039	1,931	4,970
2001	5,020	1,037	6,057
2002	3,381	1,654	5,035
2003	1,286	1,438	2,724
2004	4,636	2,118	6,754
2005	1,798	2,030	3,828
2006	3,169	2,759	5,928
2007	1,371	5,969	7,340
총계	64,700	23,187	87,887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2.7 높은 북미, 유럽국가 투자 비중

국가별 대 칠레 투자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캐나다, 미국 등 북미 국가들의 투자액이 매우 높은 가운데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또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07년 대 칠레 최대 투자지역은 북미(미국, 캐나다)로 총 투자금액이 6억 달러에 육박하여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43%를 기록했다.

〈대 칠레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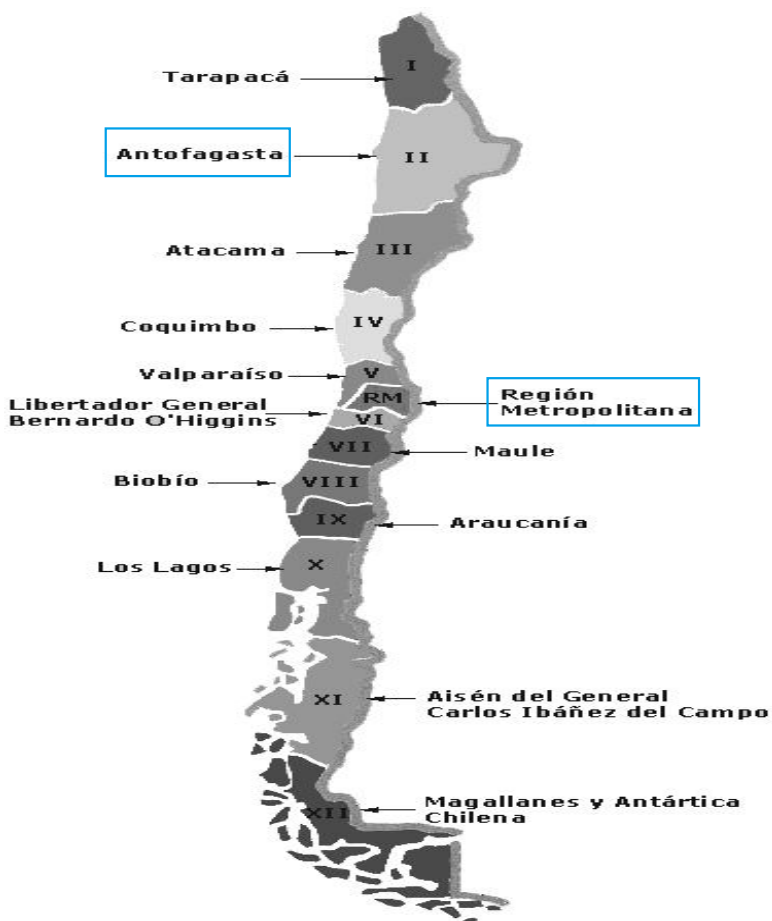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1	캐나다	367,730	83,901	1,833,019	333,928	10,742,341
2	미국	122,816	-14,957	337,243	265,629	16,336,888
3	콜롬비아	0	23,800	2,327	194,455	256,866
4	스페인	3,742,042	206,957	74,913	106,692	13,886,696
5	호주	134,728	285,596	206,163	104,970	2,966,494
6	네덜란드	2,409	-21,082	1,114	82,888	1,611,397
7	멕시코	149,714	604,767	47,300	54,547	1,020,581
8	아르헨티나	-101,243	3,805	58,126	49,113	524,800
9	브라질	-15,965	20,332	32,877	36,359	358,286
10	일본	18,323	47,205	51,175	32,533	1,871,094
11	케이만제도	150	11,538	41,458	24,975	347,371
12	독일	17,684	22,018	161,337	17,611	712,529
13	국제기구	11,668	5,000	5,000	15,000	349,767
14	프랑스	2,527	4,735	21,370	14,428	1,392,155
15	노르웨이	8,464	1,503	7,685	14,400	342,927
16	영국	95,419	255,387	93,526	8,243	5,659,599
합계		4,635,908	1,797,655	3,169,101	1,371,079	64,700,531

주: 2007년 기준 순위

그 뒤로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이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90만 달러와 3,2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7년도 한국의 대 칠레 투자 건은 없었으며 1974-2007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누적투자액의 0.06%에 그치고 있다.

2.8 주별 외국인 투자 현황

칠레 각 자치주별 외국인 투자통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지역(RM)과 제 2지역에 대한 투자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자치주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지역	2004	2005	2006	2007	1974-2007
I	116,708	2,537	16,175	23,884	3,462,777
II	135,492	440,121	322,971	140,258	8,894,090
III	39,300	61,574	667,571	71,653	2,641,313
IV	18,400	8,450	9,508	3,112	1,908,326
V	83,846	550	3,301	6,420	1,123,970
VI	33,484	1,503	28,535	17,141	301,501
VII	47	11,644	107	2,996	556,982
VIII	42,280	186,147	81,592	264	1,073,557
IX	0	0	0	0	86,142
X	227	176	6,000	2,270	592,250
XI	5,640	9,970	4,000	4,000	202,948
XII	250,351	2,233	1,430	10,772	1,278,583
RM	270,329	498,174	390,717	250,579	18,195,889
多지역	3,639,804	574,576	1,637,194	837,730	24,382,203
총계	4,635,908	1,797,655	3,169,101	1,371,079	64,700,531

자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로 금융, 유통, 서비스업 및 일부 제조업의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제 2지역의 경우 칠레 구리광산 밀집지역으로 광업투자가 대부분이다.

3. 한국의 대 칠레 투자 동향

3.1 투자 활동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의 투자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누적 투자액은 약 1억 달러 수준이다. 투자분야는 제조, 유통업 및 임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2008년 우리기업의 대 칠레 투자현황(누적)〉

(단위: 건, 천 달러)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칠레	83	35	123,320	99	104,0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우리기업의 대 칠레 분야별 투자현황(누적)〉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림어업	12	3	6,677	8	2,863
광업	3	1	31,900	6	31,204
제조업	41	18	24,037	57	15,158
건설업	2	2	808	5	508
도소매	22	10	58,114	21	54,170
정보/서비스업	3	1	1,785	2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2 투자 유망 분야

한국의 대 칠레 투자동향에 큰 변화는 없으나 2006년 이후 광산분야를 비롯하여 칠레 전력분야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산업개발이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제특성과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이 지속되어온 칠레 경제특성 간의 차이로 인해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광산, 전력부문에서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칠레의 전력, 수도, 통신 및 주요 사회 간접자본은 모두 민영화된 상태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광산분야 역시 Codelco라는 국영기업이 있지만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주요 고속도로 및 공항, 항만 또한 발주처는 정부이지만 모두 BOT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 및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대 정부의 협력보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진출지원이 유효하다.

이와 반대로 현지 진출 다국적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외플랜트수주실적 통계에 따르면 1993~2008년 10월까지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8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건설을 제외한 두산,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 포스코 건설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일부를 채수주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기업의 칠레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기업은 포스코 1개 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건설 대기업의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향후 진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칠레 플랜트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번호	업체명	설비구분	프로젝트명	금액
1	두산중공업	기자재	BLR	64,337
2	두산중공업	기자재	BLR	64,010
3	현대엔지니어링	발전&담수	Campich 240MW TPP 설계용역	8,079
4	현대엔지니어링	발전&담수	Angamos 600MW CFPP 설계용역	18,146
5	포스코건설	발전&담수	캄피체 석탄화력 발전소	436,000
6	포스코건설	발전&담수	앙가모스 석탄화력발전소	869,000
7	두산중공업	담수	Nueva Ventanas TPP	53,427
8	포스코건설	발전	240MW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370,000

자료: 한국 플랜트산업협회 제공 플랜트 수주실적(www.plantkorea.com)

3.3 제조업종별 대 칠레 투자 현황

제조업종별로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의 대 칠레 투자가 전체 투자건수 및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목재, 식품, 섬유부문이 전체 57건 중 44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현지교민들의 투자라는 점을 가만할 경우 실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제조업종별 투자 통계〉

(단위: 천 달러)

업종중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41	24,037	57	15,158
식료품 제조업	13	4,202	16	2,63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	8	1	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480	15	1,47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1,488	3	47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3	14,612	13	9,8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	418	4	1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104	2	1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625	3	5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200	0	0
기타 제품 제조업	1	900	0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4 투자자 규모별 투자 현황

투자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 칠레 투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총투자금액 대비 각 투자자 형태별 비중은 대기업이 7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의 경우 주로 유통, 마케팅 법인 등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투자자 규모별 투자금액〉

(단위: 천 달러)

주투자자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83	123,320	99	104,002
대기업	21	86,130	24	79,613
중소기업	46	32,222	58	22,062
개인기업	4	925	2	198
개인	12	4,043	15	2,1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대기업의 투자진출 형태와 큰 차이는 없다. 주로 현지 거래기업과의 독점 딜러십 체결 이후, 지사 설립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02

투자 환경

1. 개요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며 자유로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이러한 차별 없는 투자유치 정책의 이면에 외국 기업이 기대하는 투자자에 대한 혜택 또한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칠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철저한 자유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칠레 시장에서 공정한 시스템, 차별 없는 기업경영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자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현지화가 진출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해 칠레 시장의 전력, 수도, 가스를 비롯한 통신, 인프라 부문 모두 유럽 및 북미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며 칠레의 주요 산업인 광업부문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들 기업들은 100% 현지화에 성공하였으며 칠레 업계 및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강력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후발 주자인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100% 개방정책을 고수하고는 있으나 이미 진출한 다국적기업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진출 장벽이 존재한다.

1.1 중남미 최고 투자 환경

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

칠레는 중남미 선진시장으로서 국가경쟁력,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중남미 최고수준은 물론 세계에서조차 상위권인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 민주화 이후 칠레는 장기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중도좌파의 지속적인 정권유지를 통해 각종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점도 칠레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도 197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자유화 및 주요 산업 민영화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중남미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실제로 칠레는 1980년대 연금제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 전력, 통신, 수도 등의 민영화를 완료하였으며 PPP(Public-Private-Partnerships)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주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와의 적극적인 FTA 및 관세협정을 통해 자국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나. 역동적인 경제성장

칠레의 1990~2004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5.6%로 중남미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5~2007년의 경제성장률 또한 5%대를 유지하면서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90년 칠레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9%가 극빈층에 속해있었으나 1990년 이후 시행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전략 추진 결과, 2003년 그 비중은 18%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가 실시한 연금제도, 교육시스템 및 빈곤층 지원 시스템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로 국가 시스템이 큰 전환기를 맞기도 하였다. 실제로 IMF는 2004년 발표한 자료에서 칠레 정부의 국가 성장 기반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 국가 전반적인 교육수준향상, 생산성 향상 및 빈부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 중남미 지역 허브

칠레는 인구 4억 명에 달하는 중남미 시장의 교통,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LAN 항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 직항 또는 Code Share 항공노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최고의 서비스 및 안전을 보장하는 공항으로 인정받은 산티아고 공항은 전 세계 39개 취항사를 확보하고 있다.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따르면 2007년 국제선 이용 승객은 총 486만 명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 물류의 경우 36개의 민간 또는 공영 항구를 통해 전체 물동량의 80%, 특히 수출의 경우 96%를 운송하고 있다. 칠레의 국제 해상운송 규모는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서양 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칠레는 태평양 항구를 통해 대서양과 접하고 있으나 내륙 국가인 인근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물동량까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남미 물류허브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할 예정이다.

1.2 완전 경쟁 및 개방 국가

자유시장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전면개방이라는 두 개의 경제정책을 약 40년 간 유지해온 칠레는 자국 산업보호 및 육성보다는 투자유치 및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경제정책에 매우 친화적이며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호의적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정부는 방송 및 항구와 같은 소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외한 전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및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100% 보장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시스템 보완 및 신 성장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칠레 생산진흥청은 IT, BT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치주 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가 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 300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칠레 시장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칠레 진출 기업들은 칠레 시장을 통한 중남미 시장진출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3 우수한 투자 인프라

세계에서 가장 긴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유명한 칠레의 남북 총 연장은 4000km가 넘으며 적도부터 남극지방까지 이어진 영토는 북으로는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 남으로는 수산물을 비롯한 생물자원의 보고를 이룬다.

이러한 자연자원은 칠레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정부주도의 자원 및 관련 인프라 개발보다는 민간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그 결과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칠레 정부에서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 BOT(Build-Own-Operate Transfer)방식의 Concession 시스템은 현재 칠레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인 Ruta 5 건설을 가능하게 했으며 각 산티아고 공항을 비롯한 지역 공항 건설 및 도시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현대적 인프라 확충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칠레의 투자유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교육수준의 경우,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2004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1,000명당 608명으로 1996년 대비 65% 이상 증가하여 향후 칠레 인적자원에 획기적인 수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iversidad de Catolica, Universidad Adolfo Ibanez, Universidad Chile 등 칠레 주요 대학은 중남미 10대 대학에 랭크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1.4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유치정책

칠레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

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까지 칠레 정부는 Arica, Austral 등 4개의 개발 낙후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시행하였다. 2008년을 기점으로 동 인센티브는 2개 지역으로 축소될 예정이나 아직 인센티브제도 연장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 동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는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 자본에 100% 개방되어 있으며 투자자본의 회수, 증액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 동 정책은 1980년대부터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1 투자 규제

칠레는 100%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Mass Media, Air Transportation, Coastal Trade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칠레 영토 내에서의 리튬, 원전,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이 금지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칠레 정부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칠레 투자유치 제한 분야〉

해운업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 인 개인소유 기업이나 칠레인(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 소재 기업에게만 허용한다. 단, 900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하고 있다.

항공업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며 칠레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

매스컴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의 승인을 득할 경우 자본투자는 가능하다.

어업

투자자의 국가가 해당국에서 칠레인들에게 투자를 용인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상대주의 적용)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채굴된 원유는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ENAP이 선취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자력관련 광물개발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 관련자원의 채굴 및 판매는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되어야 한다.

2.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칠레 정부의 자세

전통적으로 칠레는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유치 정책 및 일반적인 시스템만을 관리할 뿐 투자진출 후 시장 내 활동에 대해서는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기업 설립 허가나 등록 절차는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NVER: www.cinver.cl)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조세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칠레 국세청(www.sii.cl) 및 생산진흥청(www.corfo.cl)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칠레 외국인 투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칠레 외국인 투자위원회(CINVER: Comité de Inversiones Extranjera)로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을 대행하고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칠레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인 DL-600 및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칠레 투자유치 로드쇼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3 제약 요인

현재 칠레는 투자유치 시스템 및 정치경제적 면에서 중남미 지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제조업 기반은 주요 투자유치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 기준, 중남미 시장의 10%도 되지 않는 협소한 시장은 제조업 부문의 진출에는 부적합한 환경이며 시장 규모면에서는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 시장 확대 및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칠레 외국인 투자의 80% 이상이 광업 및 기타 관련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 급감은 물론 정부 수입 급감으로 인한 투자 인프라 개선 둔화와 미래 투자유치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분야 다양화 및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에서 주요 투자유치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있는 IT, BT 및 기타 하이테크 분야의 경우 칠레 인적자원 수준 차이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투자입지 여건

3.1 생산 인프라

광대한 면적을 가진 칠레의 각 주는 자원과 인구의 분포, 교통망, 에너지 원가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전력

칠레의 전력산업 체제는 100% 민영화 되어있는 상태로 각각의 민영 기업이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력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Endesa, Colbun, AES Gener, Electroandina, Gasatacamá 5개 사이며, 기타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생산 시스템은 SIC(칠레 중부 전력 공급 시스템)로 칠레 제2지역 일부를 시작으로 제10지역 칠로에 섬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동 지역은 총 면적 326천km²로 칠레 전체 인구의 92.7%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 현재 SIC를 통해 생산된 총 전력생산량은 34,380GWh로 전력생산량의 67%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9년간 통계 분석결과 SIC가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전력 수요량은 연평균 7%씩 증가하였으며 매 10년마다 수요량은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발전 기업은 매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발전량 확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발전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 생산 비중을 점차 높여갈 예정이다.

나. 통신

칠레는 1982년 통신 인프라 분야를 민영화 하였으며 1988년 국영 통신 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이후 민간 사업자 간의 경쟁적인 투자에 힘입어 2000년 말 산티아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중남미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였다.

1) 칠레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추이

칠레의 디지털 이동통신서비스는 GSM 방식으로, 칠레 통신청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83.66%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	증감률	보급률
2000	3,401,525	-	21.97
2001	5,100,783	49.9	32.57
2002	6,244,310	22.4	39.44
2003	7,268,281	16.4	45.41
2004	9,261,385	27.4	57.24
2005	10,569,572	14.1	64.65
2006	12,450,801	17.8	75.39
2007	13,955,202	12.8	83.66

자료: 칠레 통신청(Subtel)

칠레 이동통신사는 현재 Entel, Movistar, Claro, 3개 사로 Entel을 제외한 2개 사는 각각 스페인과 멕시코 기업이다. 각 기업의 경쟁구도는 Entel과 Movistar의 시장 주도권 경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Claro의 경우, 통화 품질 및 서비스 문제로 경쟁에서 뒤쳐진 상황이다. 2007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Movistar가 여전히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대비 점유율이 12.49%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 2위 업체인 Entel과의 점유율 차이도 17.33%에서 2.64%로 좁혀졌다.

〈칠레 이동통신사의 연도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연도	Claro	ENTEL PCS	Movistar
2000	7.76	37.45	54.78
2001	12.35	43.33	44.32
2002	15.80	41.13	43.07
2003	16.66	37.37	45.96
2004	16.61	35.32	48.07
2005	17.53	38.17	44.30
2006	18.32	39.07	42.61
2007	18.06	39.65	42.29

자료: 칠레 통신청(Subtel)

최근 칠레 이동통신사의 주요 현안은 3G 서비스 개시로, 현재 3개 통신사 모두 3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Telecom 서비스 이외에 각종 모바일 네트워크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말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이동통신에 비해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 2000년 대비 2배 이상 보급률이 크게 증가했다.

〈 칠레 인터넷 보급률 현황 〉

(단위: 명, %)

연도	총 이용자	연간성장률	100명 당 이용자 수	연간성장률
2000	585,489	-	3.8	-
2001	698,127	19.2	4.5	17.9
2002	757,760	8.5	4.8	7.3
2003	836,007	10.3	5.2	9.1
2004	805,315	-3.7	5.0	-4.7
2005	906,079	12.5	5.5	11.3
2006	1,105,110	22.0	6.7	20.7
2007	1,355,760	22.7	8.1	21.5

자료: 칠레 통신청(Subtel)

3.2 제조업 투자 여건

가. 일반 제조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제조업의 대 칠레 진출여건은 취약하며 협소한 시장규모 및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도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다국적 공산품 제조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칠레 시장 진출에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식품 가공업

칠레 식품 가공업의 경우 1차 농수산물 가공생산 및 관련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농수산 분야는 현재 부가가치 상품보다는 원자재 형태의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업계의 가공 및 포장기술 확보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업계의 동 분야 관련 기술 및 기계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칠레의 주요 농수산물 가공업체인 Grupo Super, Aritizia, Tucapel 등은 점차 가공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품목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 또한 경우, 적극적인 자국 식품 가공기술 홍보 및 위생관리 시스템 홍보를 통해 진출 확대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틀류환경

가. 도로

칠레는 지형 상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 발달이 국제 수준에 비교하여 매우 뒤쳐져 있다. 칠레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Ruta 5를 중심축으로 도시 간 고속도로 및 도시 순환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산티아고 지역 중심으로 지방 및 저개발 지역의 경우 도로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연간 1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칠레의 도시 간 고속도로의 경우 왕복 6차선을 기본으로 경우에 따라 2~4차선 도로도 운영 중이다. 도시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통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최신 기술을 운영 중이다. 현재 모든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30~40년이다.

〈관련 사이트〉

칠레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

<http://www.mop.cl>

나. 항만

칠레에는 현재 10개 이상의 항만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교역의 80%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이용되는 항구는 San Antonio, Valparaiso, Antofagasta 등이며 북부항구의 경우 주로 광물 수출 중심이다. San Antonio, Valparaiso와 같은 중부항구의 경우 각종 소비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의 항만은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 및 운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 투자 및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 공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칠레에는 총 50여개의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은 산티아고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공항도 마찬가지로 100% 민간 자본 투자 및 운영이 기본이며 현재 산티아고 공항의 경우 스페인, 칠레 자본의 컨소시엄으로 SCL사가 운영 중이다.

4. 주요 투자 유망분야

칠레의 투자유망 분야는 Concession, 전력, 금융 및 유통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 유통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유통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제품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주요 주의 지역별 특징과 산업특성, 이들 지역으로 투자 진출할 경우 적합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였다.

4.1 Concession 부문

칠레 정부는 적극적인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북미 및 유럽 기업은 성공적인 칠레 Concession 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가 고안한 BOT-Concession 시장은 민간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메커니즘과 시스템으로 중남미 주요국의 성공 모델로 적용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연간 10건 이상의 BOT-Concession 신규프로젝트와 이전 계약이 만료된 기존 시설의 개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범위를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시설에서 교도소, 정부청사건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Concession 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 정부 관계자 또한 Concession 시장의 외자 유치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그 틀을 같이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통해 전체 시장의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플랜트 및 기타 토목 프로젝트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에게 칠레 Concession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Concession(특정기업이 공공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허가 받아 운영)

4.2 전력 분야

칠레의 고질적인 전력난은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정부는 오랜 기간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칠레의 전력산업은 100%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Endesa, Colbun, AES Gener 등 3개의 메이저 전력기업을 중심으로 총 10여개의 기업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기업들은 칠레 정부가 전력부문을 민영화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정부 및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졌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우리 전력기업에게 진출 장벽이 존재하며 현지 시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단독 진출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Conventional generating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보다는 신 분야 투자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 신재생에너지는 칠레의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0년부터 각 발전 기업에게 생산 전력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스페인 기업의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 전력기업들은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Conventional 분야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고 상당부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칠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금융 및 유통산업

칠레 산업구조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칠레 연간 GDP의 30% 이상이 서비스업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유통,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금융기업의 진출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스페인계 주요 금융기업인 BBVA와 Santander가 진출해 있으며 그 밖에 Citigroup, AIG, Zurich 등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이미 칠레 시장에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칠레 진출을 통해 칠레 내 각종 광산분야 개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한 중남미 프로젝트 시장의 파이낸싱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유통업의 경우 칠레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및 매우 높다. D&S, Falabella, Ripley 등의 3대 유통기업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단독 브랜드 진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통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칠레 시장 진출확대 및 향후 중남미 지역 시장점유율 확대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M&A 또는 지분참여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투자 시 고려 사항

업종을 불문하고 대 칠레 투자를 고려할 경우, 칠레 현지 사정 및 산업별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세부 분야에 따라 지역별 주요산업, 주요 시장과의 접근성, 주변 인프라 현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환경정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같은 상세한 입지선정 및 분석 검토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현지 제도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5.1 노동력

노동력은 임금수준, 가용노동력, 생산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임금과 가용노동력은 정부통계나 기존 업체의 생산 시설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나 생산성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통계치가 없으므로 유사업종의 현장 경험치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5.2 운송 교통

공장 위치 선정의 핵심 요소인 원자재, 제품, 인력 등의 운송비와 도로, 철도 및 해상 운송 인프라 구축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재 산지와 거리, 고객의 위치까지의 거리, 제품의 특성, 수량, 운송 속도, 운송 주기 등 자사의 상황에 적합한 운송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5.3 환경 문제

최근에 모든 주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제조 후 폐기물 처리 규정이나 매연에 의한 공기오염도 제한 규정 등 해당 지역의 기준을 파악하고 환경규정을 맞추기 위한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처리장치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이 그 예이다.

5.4 에너지 원가

전기, 가스, 수돗물 등의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요금 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금을 비교 분석해야한다. 해당지역의 서비스 제공기업과 요금협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

5.5 시장 접근성

생산시설을 고객회사들 주위에 설치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전국에 산재한 고객시장에 가까이 접근하여 생산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시장의 범위를 그룹화하여 이에 따른 생산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5.6 생산 시설비용

부지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해당 지역, 주변 지역 인프라, 주정부 및 시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건물은 신규 건설, 기존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6. 현지 금융

6.1 대출 여건

칠레의 금융업은 매우 보수적이며 리스크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해 대출심사 및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이낸싱 및 대출이 이루어진다. 칠레 금융기관은 외국기업에 대한 대출에 큰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신 조건만 갖추면 현지 은행으로부터 금융 조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용자료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축소 또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방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대해 각 금융기관별로 일정 비율을 더해 적용되며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용금리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칠레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 때문에 대 칠레 투자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칠레 외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사례가 많다.

6.2 대출 기관의 종류와 특징

가. 다국적 은행

BBVA, Banco Santander, Citibank 등은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들의 현지시장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나. 로컬 은행

Banco de Chile, Scotia Bank, BCI 등의 로컬 은행들이 있으며 칠레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03

투자 방식 및 절차

1. 사전 타당성 조사

대 칠레 투자는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아시아, 북미 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더 신중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크게 투자규모, 투자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규모는 칠레 시장에 투자되는 총 금액이며 투자 형태는 단독투자, Joint Venture, Consortium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칠레의 프로젝트 진출 분야의 경우, 한국기업의 사전지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현지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현지 로컬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투자입지에 대한 조사는 현지 투자 대상 산업 밀집지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현황, 주요 시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별 환경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2. 투자 방식

2.1 개요

대 칠레 외국인 투자에 대해 칠레 정부 차원의 규제는 거의 없어 칠레 경제원칙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칠레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칠레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조세의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게 조세제도 및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탈세 및 부당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작은 구멍가게도 세무서에 사업신고는 물론 세금 부과용 공식 영수증 발행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막론하고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칠레 활동을 위해서는 투자형태에 따른 조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2 주요 체크 리스트

〈투자지역 선정 시 주요 체크 리스트〉

분 야	세부 검토 사항
제조환경	• 인프라 정비(전기, 수도, 통신, 도로의 접근성, 지반건고성 등) • 토지 및 공장 확보 여건 • 폐기물, 폐수처리 등 환경규제 정도

분 야	세부 검토 사항
물류환경	• 원부자재 조달처와 제품 거래선 거리 • 물류 인프라 여건(통신망, 교통 운송망) • 항만과의 접근성
산업집적	• 관련 산업체의 밀집 정도 • 부품조달과 제품판매 용이 정도
주변시장	• 시장규모 및 연관 산업 발전 정도 • 타 기업과의 경쟁 정도
인력	• 관리·기술인력 및 단순 제조인력 확보 • 노동력의 질 • 임금수준(각종 사회보험료 포함)
생산코스트	• 전력, 수도, 가스 등 에너지 비용 • 통신비, 수송비 • 세금 등
외자유치 자세	• 지방정부의 기업 투자 우대정책(지역의 중점 투자유치산업과의 부합 여부 등) • 외자기업 진출동향 • 외자유치에 대한 열의 및 지원자세
소관당국의 행정처리	• 경제법규, 규정의 완비 및 투명도 • 세관, 세무, 노동관서의 행정투명도, 합리성
사회 환경	• 치안정도 • 의식형태의 개방도 • 행정관리의 자율성 • 인구수 및 인구구성 • 상주 외국인 규모 • 영어 구사인력 가용성 • 교육수준 및 교육시설, 병원의료시설
자연환경	• 기후 • 지하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 위치(인근 남미국가와의 거리 등)
기타	• 한국기업 진출동향 및 동 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 생산 및 영업계획 수립 체크 리스트 〉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판매계획	• 초년도 판매와 향후 몇 년간의 판매고 및 가격추이 예측 • 판매 촉진 활동 수행 계획
생산계획	• 적정한 제품 재고 수준 - 발주하는 데 특별한 관습 및 방법이 있는가? - 대리점의 재고 기능은 어떠한가? - 수주 생산인지, 계획 생산인지 확인 • 초년도의 월차 생산량 및 향후 몇 년간 생산 계획 • 기술지원 계약 - 기술지원 내용 및 계약기간은 어떠한가? - 평가는 어떻게? • 기술자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원자재 조달 계획	• 현지조달 가능 원자재 - 현지조달 가능한 원자재 및 주요 공급원은 어디인가 - 품질 및 납기는 어떠한가? - 수송방법 및 수송시간은 어떠한가? - 지불조건은 어떠한가, 재고필요량은 어느 정도인가?
수입원자재	• 수입해야만 하는 원자재는 무엇인가? • 주요 공급처는 어디인가? • 수입업자는 누구인가 - 수입업자가 현지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접 수입에 따른 장단점과 수입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 • 품질 및 수입가격 (보험료, 관세 등 포함)은 어떠한가? • 납기, 지불조건, 재고필요량은 어떠한가?
원자재 사용계획 검토	• 현지 조달분 및 수입분 • 구입수량 및 구입비용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설비조달계획	주요 설비 •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기계설비 이외에 수리 혹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부품 검토 • 주요 공급처는 어디인가? • 가격 및 지불조건은 어떠한가? • 리스시의 장점은? • 수입할 설비는 무엇인가? • 수입제한은 있는가? - 수입기계의 면세조치가 있다해도 면세수속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조업개시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해야 함. • 수입비용을 포함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기계수리는 현지 회사에서 가능한가? - 현지에서 기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자 파견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부대설비 • 신뢰할 만한 공사용역 회사는 있는가? • 건설회사에서 일괄청부로 하는가? • 부대설비 중에서 현지조달 가능한 것은? • 가격 및 지불조건은 어떠한가? • 수입하는 부대설비는 어떤 것인가? • 수입비용을 포함한 가격은 얼마인가? • 필요한 설비공구는 무엇인가? - 수입해야만 하는 설비공구는 무엇인가? - 현지조달 가능한 설비공구는 무엇인가?
인프라 현황	공장입지 조건 • 토지 - 토지, 기후상황은 어떠한가? - 지형, 지질은 공장용지에 적합한가? -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 토지가격 및 토지 취득 시 수반되는 세금은?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인프라 현황	공장입지 조건	• 전기 - 안정공급은 가능한가, 자가발전은 필요한가? - 전압, 주파수는, 전력공사에 수반되는 부담금은? -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전력 요금체계 및 세금은 어떠한가?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 용수 - 안정공급은 가능한가? 저수시설은 필요한가? -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은? -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상수도 요금체계는?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 연료 - 안정공급은 가능한가? - 자가저장 설비는 필요한가?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 운수 - 원자재 조달용 수송수단 및 그 소요시간은? - 제품수송용 국내 교통수단과 그 소요시간은? - 종업원 퇴근 시 교통수단은 있는가? -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는 있는가? - 운반비용 체계는? - 교통 파업은 자주 있는가? - 항만, 공항의 적하장 등의 취급상황은 어떤지? - 해상, 항공수송의 소요일과 요금체계는 어떠한가? - 통관상 문제는 없는가?, 그 대책은?
		• 통신 - 통신사정은 어떤가? 설치비와 요금체계는?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인프라 현황	공장입지 조건	• 노동력 확보 - 지역의 통근권 내 노동인구, 실업률, 연령분포는? -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실정은 어떠한가? - 인근 공장의 작업내용 및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건물 물색	• 기초 공사비용 및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건축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설계상 유의점(기후상, 법규상)은 무엇인가? • 건축비용과 건축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관할관청의 인·허가사항은 무엇인가, 그 절차 및 소요기간은? • 신뢰할 만한 건축 설계사무소, 건설회사는? • 건축자재는 현지조달이 가능한가?
관리 및 영업조직	• 조직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 현지의 풍습, 관습을 고려하여 현지인 관점에서 구성 • 파견사원의 역할과 지위는 어떠한가? • 관리자의 구인방법 및 승급방법은 어떠한가?	
공장조직	• 조직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 본사 파견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 현지 공장관리자 및 기술자의 구인방법은?	
인력고용 임금	노동력 확보	• 노동력의 이직 실태와 관습은 어떠한가? • 노동자의 기질은 어떠한가? • 인종에 따라 노동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 노동자의 기능수준은 어떠한가? • 일반적인 구인방법은 무엇인가?
	노동 계약	• 노동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 해고는 용이한가? 그 절차는? • 일반적인 퇴직제도는 무엇인가?
	임금	• 직종별, 성별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 과거 3년간 임금상승률은 어떠한가? • 최저 임금규정은 있는가? 그 내용은? • 일반적인 임금체계는 어떠한가?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인력고용	복리후생	• 어떠한 의무 보험제도가 있는가? • 기업부담분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은?
	취업규정	• 휴일은 언제인가? • 어떠한 휴가를 인정하는가? • 취업관련 법적규제는 어떠한가?
	노동조합	• 노동조합운동은 활발한가? 노동조합의 특성은?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어떠한가?
	교육훈련	•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 기간 및 방법은 어떠한가?
	급여체계, 인건비	• 관리 및 판매조직의 급여체계 • 공장조직(공장관리자포함)의 급여체계

2.3 대 칠레 투자를 위한 국내 절차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제도는 기존의 투자 허가 방식에서 1997년 민간은행 신고수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다. 2005년 6월 정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한도 폐지, 해외직접투자 한도 확대,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 국제개발금융기구의 협조 용자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강화, KOTRA에 해외투자지원 전담기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폐지, 대형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을 발표,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히 폐지,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법령〉

관련법령	목적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지원제도	분류	내용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 내(중소기업의 경우 9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현지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지원제도	분류	내용
금융지원	대외경제협력 기금	· 투자대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장기자원개발사업 및 투자회임기간이 긴 사업 · 용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연리 5~6%범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정기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투자자금 대출
세제지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법인세법 제57조)	·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과정 중에 외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액공제 한도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함 · 국내기업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까지 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특정 자원보유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면제한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해외투자 보험	한국수출보험 공사	· 해외 투자를 행한 후 투자 상대국에서 수송, 전쟁, 약정불이행, 송금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합자·합작 투자 파트너의 신용조사

지원제도	분류	내용
행정지원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수집·관리·해결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업무(지식경제부, KOTRA)
	해외투자종합 지원센터	· 해외 진출기업의 투자 현황 및 지원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KOTRA)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해외투자자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기존 재경부 홈페이지 내에 “해외직접투자 인포넷(Information Network)” 을 운영
	해외투자 현지법인 정보제공시스템 (KOCIS)	· 기재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InfoNet) 홈페이지 내에 “해외 현지법인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신설하여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 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

자료원: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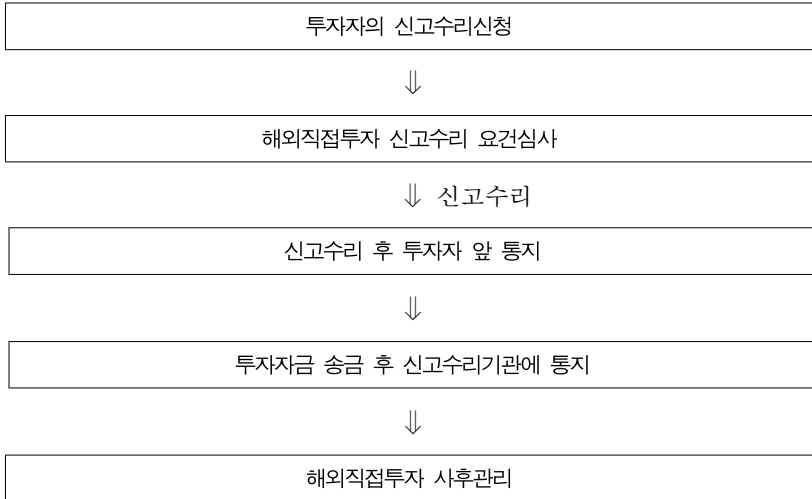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는 해외투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진행하는데 칠레 정부로부터 투자허가를 받거나 최소한 예비투자 허가를 받은 후에 국내에 투자 신고수리를 신청해야 한다.대략적인 절차는 투자자가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수리 확정을 받고, 투자자금 송금 후 신고수리 기관에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종(금융·보험업)이나 조건(투자금액)에 따라 국내 투자신고 수리기관이 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될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기관 〉

기관	내용
주거래은행 (외국환은행)	☐ 금융, 보험업 이외의 해외 직접투자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 최다 은행 -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기획재정부	☐ 미화 1천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 중인 경우 -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적자를 시현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 불이상 잠식된 경우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참고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한도가 자기자본 범위 내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한은 없음. 특히, 국내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로서 주된 투자자의 투자비율 미만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주된 투자자의 신고수리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금융, 보험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보험업 영위를 위한 자회사, 손회사 설립 또는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의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자료원: 기획 재정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절차〉



자료원 : 기획재정부

참고로 현물로 투자할 때에는 공통제출 서류 외에 현물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현물투자명세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진다. 단독투자의 경우는 현물의 구체적인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¹⁾)가 명기된 현물투자명세서를 첨부해서 투자신고를 해야 하며, 합자 및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현물의 구체적인 명세가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료, 상표권, 소프트웨어를 폴란드 현지기업과 합자 및 합작투자를 하기 위해 국내에서 해외투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통제출서류 외에 합자 및 합작 상대방과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투자금액은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금액을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중고품인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신제품 경우에는 견적서 등을 받아 부가가치세, 동 현물을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감정평가서 및 견적서 등은 투자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시 제출 서류 〉

구분	내용
공통제출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 단,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개요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투자자별)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납세증명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일 이내),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추가제출서류	① 대부투자 시 금전대차계약서(공증기관의 공증 필요) ② 합작투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합작계약서 ③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④ 투자금액 1백만 불 초과 시 - 최근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 현물투자 시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신품의 경우) - 증액투자인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⑤ 부동산 취득관련 해외직접투자자의 경우 현지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 추가 ⑥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⑦ 현지법인이 제3국에 역외공장 등 설립 시 자회사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개요서

보완서류	①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대표자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당국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③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④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자기자본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투자 시 :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실을 공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자본의 30% 이상 투자 시 :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영업일) 이내이며, 기획재정부에 신고수리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30일(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서를 검토한 후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의 사유 및 타당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는 신고수리기관이 1회에 한하여 보완, 보정 또는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신고수리 심사내용은 보통 투자자의 자격요건, 투자금액, 투자계획, 자금조달 계획, 현물투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현지금융²⁾에 대한 거주자의 보증한도,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신고절차 이행여부³⁾ 등이다. 이밖에도 합작 투자일 경우에는 국내 및 현지국의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한다.

신고수리 기관에서는 심사 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1부에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후 은행장 직인을 날인하여 우리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신고수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수리일부터

2) 현지금융: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발행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사업 중 사전신고 대상사업을 정해놓았다. 즉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산업, 해외건설업, 설계공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상장법 또는 등록법인인 경우 해외투자 사업내용을 증권 관계기관에 사전신고하여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받은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면 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투자자는 현금, 현물, 출자 후 또는 국내에서 받은 투자금융 대출자 금융을 칠레로 송금하고, 나중에 칠레 현지배인을 청산한 후에는 국내 신고 기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신고수리 금액 합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투자제한 업종 중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투자, 중점관리가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사후관리 보고 내용〉

보고서 명칭	보고 요건	제출기한[첨부서류]
- 송금보고서	- 현금투자 시	- 송금 즉시 송금은행확인 要. 투자금액을현지금융 으로 조달하는 경우 포함 - 통관 즉시
- 현물출자 통관보고서	- 현물투자 시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현지법인 설립보고서를 포함하여 증권발행이 없 는 경우에는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 출자 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 증권사본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금전대여 상대방의 대여 금 영수증명서 또는 약속 어음
- 외화채권 취득보고서 - 해외직접투자사업 설립 보고서	- 금전대부시 - 개인기업 영위 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사업영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

보고서 명칭	보고 요건	제출기한[첨부서류]
- 원리금 회수보고서	- 금전 대여 시	- 원리금 회수 즉시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현지법인 결산서 (현지감사보고서 첨부)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 단, 현지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됨. ● 부동산관련 투자사업은 면제대상이 아님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 보고서	- 부동산관련업에 한함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해당 연도 말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명세서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 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등기부등본 등 청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의 대차대조표, 잔여재산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면장

자료원 : 기획재정부

또한 투자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 투자금액, 투자비용, 투자업종 등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⁴⁾ 투자신고 수리 변경 신청 절차는 신고수리 절차와 같으며, 제출 서류는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2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사유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원본 등이다. 칠레 현지법인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하이면 투자 개요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칠레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국내 다른 투자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양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지법인 전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 지정 주거래은행(외국환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 유관기관 〉

기관명	지원업무	전화	웹사이트
KOTRA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해외투자 관련 정보 제공 ○ 국내외 해외투자 절차 및 법률 상담 ○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 및 조사단 파견	02-3460-7114	www.kotra.or.kr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 금융지원 ○ 해외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	02-3779-6114	www.koreaexim.go.kr
한국수출 보험공사	○ 해외투자 보험 ○ 해외투자 합작파트너 신용조사	1588-3884	www.keic.or.kr
지식경제부	○ 해외투자 지원정책 수립 ○ 애로사항 조사 분석, 대책 수립	02-503-9410	www.mke.go.kr
기획재정부	○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체결 ○ 해외투자 신고수리, 사후관리 법,규정 제정	02-2110-2114	www.most.go.kr

4) 단, 투자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현지법인의 법인명, 소재지 변경은 신고수리 사항이 아니라 단순 보고사항이다.

기관명	지원업무	전화	웹사이트
중소기업 진흥공단	○ 해외투자 상담 및 자금 지원	02-769-6700	www.sbc.or.kr
대한상공 회의소	○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	02-6050-3114	www.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 무역정보 제공	1566-5114	www.kita.net
중소기업청	○ 해외투자 상담	국번 없이 1357	www.smba.go.kr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정보	○ 투자환경 자료 제공	02-3299-3114	www.kiet.re.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투자환경 자료 제공	02-3460-1114	www.kiep.go.kr
한국은행	○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 및 허가 ○ 해외간접투자 신고수리	02-759-4114	www.bok.or.kr
은행연합회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02-3705-5000	www.kfb.or.kr
외국환은행	○ 해외직접투자 사업 신고수리, 사후관리	각 은행지점	-
칠레 대사관	○ 비자발급, 투자 상담 등	02-723-9681	www.echilecor.or.kr

3. 칠레의 영업형태

3.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칠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개인회사 설립의 자격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칠레 내 경제활동은 각 분야별 법률이 정한 내용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개인회사는 칠레 중소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경영방식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법인명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명의를 법인명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업상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위험요소도 상존한다.

3.2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칠레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Silent Partnership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합자회사는 기본적으로 각 1인 또는 1개 기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전반적인 경영의 권한을 갖고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 출자자는 자신의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칠레에서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기업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활동은 부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간섭이 없으며 기업 자산공개 및 등록의 의무도 없다. 유한 책임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기업은 반드시 출자자 중 한명 이상의 이름을 파트너십 명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식 법인명에 유한회사임을 나타내는 ‘y compañía limitada’ 또는 ‘Cia LTDA’를 표기해야 한다.

3.3 주식회사(Corporation)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형태 중 하나인 주식회사는 칠레 상법 제18046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칠레의 주식회사는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 주식회사로 나뉘며 개방형 주식회사는 500명 이상의 주주 또는 전체 주식의 10%를 100명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칠레 정부는 주식회사 설립의 최소자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설립 후 3년 내에 총 투자 신고자본이 100% 투자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운영은 법인 정관 등록을 시작으로 회사 설립 후 경영은 이사회가 담당하게 된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임원은 최소 3명이며 개방형의 경우 최소 5명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을 이사회에서 주도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은 공동의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매각 및 인수합병, 자본 증자와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개최가 의무인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주총회 시 주요 의사결정 수단인 과반수의 정의는 각 기업체의 정관에 따라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과반수는 절대적 과반수를 의미한다. 법률상 합병, 기업매각, 기업 이전 등과 같은 중대 사안은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

3.4 외국기업의 현지 법인

외국기업의 칠레 내 현지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은 간단한 신고절차와 서류작업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은 칠레 상법 제18046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규정된 최소 자본금은 없다. 칠레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기업 본사 소재국의 법인 등록증, 법인정관 및 현지 법인 대표 임명장(위임장) 등이며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한 칠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4. 기업 형태별 설립 절차

4.1 개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칠레에 진출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법

인 설립과 사무소 설립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현지진출 기업은 현지법인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법인의 경우 본사의 방침 및 지시를 받는 성격이 강하나 칠레 내에서는 법률상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된다. 반면 현지 사무소의 경우, 단순히 본사의 지시 및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활동할 뿐 현지에서는 법률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지법인은 독립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칠레의 세법, 노동법 등이 적용되며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도 현지 기업과 차별 없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진출 초기 각종 세금 및 고용비용 발생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초기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 시 납부한 세금정보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여부 및 신용도 상승이 가능한 만큼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4.2 칠레의 파트너십 체결 절차

파트너십 체결은 칠레 헌법 3918호를 적용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작성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1. 파트너의 이름 및 칠레내 거주지 정보
 2. 파트너십 명칭(기업명)
 3. 각 파트너별 자본 출자 현황
 4. 사업 분야 및 목적
 5. 이윤 및 손실 분배 원칙
-

-
6. 파트너십 계약기간
 7. 청산절차
 8. 분쟁해결 방안
 9. 기업 소재지
 10. 양측 간의 기타 합의 사항
-

공증 후 60일 이내에 파트너십 당사자는 해당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파트너십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 1~4번 항목 및 6번 항목이 포함된 파트너십에 대한 요약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

4.3 칠레의 현지법인 설립 절차

칠레는 기업의 설립 및 청산절차가 가장 간단한 국가 중 하나로 법인 설립 절차에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4주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 법인의 경우 모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만 확인 되면 어떠한 외국기업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현재 칠레 법인 설립 절차는 필수 서류에 대한 공증 및 등기소 등록, 법인설립에 대한 공시 3단계이며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약은 없다.

1) 필수 요구서류 구비

칠레 시장에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칠레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 구비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칠레 정부가 해외기업의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기업의 실제 존재여부이다. 이에 따라 본사 주재국에서 발행한 법인 등록증이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법인 등록증 이외에 법인정관 및 현지법인 대표에 대한 본사의 위임장이 요구되며 모든 서류는 본사 주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 후 칠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현지 등록절차

외국기업의 칠레 현지법인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법인설립 희망 기업은 총 6개로 이루어진 필수 정보에 대한 내용을 명기한 후 공증을 받고 국내에서 구비한 필수 서류 및 현지 공증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모든 등록 과정이 끝난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설립 법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칠레 내 법인명 및 설립목적
 2. 칠레법 준수에 대한 서약
 3. 현지법인의 자산에 대한 칠레법 적용 서약
 4. 현지법인의 충분한 유동자산 보유 서약
 5. 현재 칠레 내 자본현황 및 향후 자본 증자 방식
 6. 법인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

모든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 후 최대 60일 이내에 법인설립자는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회계연도 마감 후 4개월 내에 연간 대차대조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4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은 칠레 헌법 18046호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작성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1. 주주 정보
 2. 기업명 및 소재지 정보
 3. 기업 설립 목적
 4. 활동기한(무기한 가능)
 5. 총 자본(유형, 무형자본)
 6. 조직 구성
 7. 회계연도 정의 및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8. 이윤분배 방식
 9. 청산절차
 10. 의견 충돌 시 중재 방법
 11. 이사회 구성 안
 12. 기타 주주간의 협의 사항
-

당사자는 모든 서류 구비 및 공증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주식회사 설립 신고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기업 정관을 공시하여야 한다.

5. 상용 부동산의 임대

칠레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사무실이나 창고 또는 공장부지 등을 임대할 때, 현지 부동산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칠레의 부동산 임대계약의 경우 100% 서면계약 및 공증을 요하며 계약서상의 내용은 양자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약 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칠레에만 존재하는 가상 환율인 UF 계약의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우선 사무실 또는 공장부지 임대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은 임대주와 임차인에 대한 조항, 임대 면적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이며 기타 유지보수에 대한 합의 내용,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5.1 임대료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기본 임대료와 부대시설 임대료로 구별된다. 기본 임대료는 실제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의미하며 부대시설 임대료는 개별 사무실이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및 창고의 개수에 따라 다르다. 기본 임대료는 계약 당시 합의된 m^2 당 계산된 금액으로 주로 부동산 계약은 칠레 금융기관의 가상 통화인 UF로 이루어지고 있다. UF는 물가상승률, 환율 등의 여건에 따라 매일 변동이 있으며 2008년 12월 3일 기준 1UF에 대한 칠레 페소화 환율은 21,467페소(35달러) 수준이다. 부대시설 임대료 또한 건물별로 차등은 있으나 모두 UF 계약이 기본이다.

5.2 임대 기간(Term)

일반적인 칠레의 부동산 임대기간은 2년이나 임대주와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단기 계약도 가능하다. 특히 시장 변동이 심하거나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경우, 더 나은 환경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상에 계약 파기 희망 시 3개월 전 통보를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현지 경영관리

1. 초기 경영관리

1.1 법인 계좌(은행구좌) 개설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하다.

- 법인 설립 서류 및 납세자 번호(Rol Unico Tributario)
- 은행 계좌 신청서
- 법인명의 압인(Seal)
- 법인 수표발급을 담당할 사람의 신분증(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못할 경우 대행자는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참고로 칠레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계좌구설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서는 법인등록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은행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해외송금 및 본사와의 금융거래가 잦은 기업의 경우, 중소 금융기관 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국적 금융기관보다는 칠레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신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2 근무자 파견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의 경우 주재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사의 방침 및 정책을 수행할 본사 파견 직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본사 파견 직원 및 현지인 고용이 필수적이다. 현지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본사 파견 직원 및 현지 고용인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 파견 직원의 현지 생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반가족의 현지 생활여건 기준에 대해서도 본사 또는 현지법인 자체 기준을 통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전기, 통신, 용수 선정 및 등록

칠레의 전기, 통신, 수도는 모두 100% 민영화 되어 있으나 전기, 수도의 경우 실제로는 지역별로 주요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 동 분야는 현재 반독점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 Telefonica, VTR 등 다양한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모든 인프라 분야가 민영화 되어있는 칠레에서 전력, 통신,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분야에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일반 수입 통관 절차

2.1 개요

칠레의 수입통관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전 세계 40여 개국과의 FTA 및 관세 협정이 시행되고 있어 의약품을 비롯한 비가공 농수산물, 화장품 등을 제외할 경우, 특별한 검사절차 없이 대부분 간소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칠레는 2003년 1월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물품가액의 6%에 해당하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 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현재 칠레는 우리나라 포함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실질 수입관세율은 2% 미만이다.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FTA 정식 발효 이후, HS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0~13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2.2 통관 절차

일반적으로 칠레 세관은 인보이스 금액 50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도착 후 물품반출까지 최소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 수입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 시일이 늦어질수록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으면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칠레 수입자는 특별한 수입허가 및 신고 없이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의료, 화학 및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및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Declaración de Ingreso)와 함께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전 수입승인품목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수입승인서도 제출한다. 또한 F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양식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국 간 협정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며, 선적서류 발송 시 B/L, Invoice, Packing List를 동봉한다.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칠레 FTA 협정문 검색 후 한-칠레 FTA 이행 고시 별지 제 9호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칠레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제출해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3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물품검사는 무작위 검사가 일반적이며 칠레 세관에서 중점 관리대상 품목은 마약, 불법복제품 및 환경보건 관련 품목들이다. 또한 칠레 세관은 의심이 가는 품목에 항구 내에 위치한 검사소에 품목을 압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마케팅 관리

3.1 개요

대 칠레 진출기업의 칠레 시장 내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은 마케팅을 비롯한 유통망 확보에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해 온 칠레는 제조업보다는 유통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관리는 칠레 시장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성공적인 진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칠레 유통업의 역사 및 규모에 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급자에 대한 태도 및 관행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고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과 과도한 저가 공급 요구는 공급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2 마케팅 관리 전략

가. 유력 유통업체와의 독점 딜러십 체결

칠레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초기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현지 전문 수입유통업체와의 딜러십 체결이다. 생산자-수입유통업체-전문 소비자-소비자라는 유통구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유력 바이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현지 딜러를 통해 칠레 시장에 제품을 공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칠레

시장 초기부터 직접진출이 아닌 현지 유력 자동차 딜러인 Gildemeister를 통해 진출함으로써 현지 시장 자동차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망 설치 및 확장

칠레의 인터넷 유통망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나 2006년 이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유통전문 사이트가 개설되고 있으며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칠레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함께 칠레 시장에 도입하여 시장 자체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현지 산업별 협회 활용 방법

칠레는 IT전자, 전기, 소프트웨어 등 산업별 협회가 매우 발달해있으며 대부분의 회원이 수입유통업체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협회는 산티아고를 비롯하여 칠레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업체들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협회를 통한 제품 마케팅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횡포를 피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전문적인 수입자들에게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칠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인사 및 노무 관리

4.1 고용계약

기업 내 종업원의 최소 85%는 칠레 국적인을 고용해야 한다.(종업원 25인 미만의 기업 제외) 또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칠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또 다시 연장 시에는(또는 계약 기간의 합이 2년 초과 시) 영구고용계약으로 본다. 예를 들면 처음 1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였을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계약 시에는 영구계약이 된다. 따라서 영구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단 1회만 갱신해야 하며,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용역계약

고용 계약에 의한 고용형태와는 별도로 자주 이용되는 민법상의 용역계약(contrato a honorario)이 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 등에 단기 용역이 필요할 경우 많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노동자는 이를 수행한 후 용역료를 지급 받고 용역료 영수증(boleta de honorario)을 고용주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비, 의료보험비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는 해당 업무만 완수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출석부 기재, 일과시간 준수, 복종 강요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노동 계약으로 간주돼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 하청(외주용역)

‘하청서비스’란 기업의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해 하청업체(Contratista)에 외주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청업체에서는 자사의 직원,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위탁 받은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원청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하청업체에서 급여 및 고용주세 납부 등의 의무가 있으나, 하청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중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사전에 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력파견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파견근로 양산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는 업종을 특정 서비스 1가지로 신고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서비스만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광산업계에서 하청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4.2 근무시간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 이 외에 50%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사장, 이사, 부장 등 고위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근무시간기록부(Libro de Asistencia)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노동청에서 작업장 실태 조사를

나올 경우 근무시간 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노무관련 소송 발생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치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4.3 법정휴가

근무연한이 1년을 경과할 경우,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갖는다. 근속연수가 10년이 되면 이후 매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사전에 합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12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기간에 고용주는 봉급 지불을 중단하며, 근로자는 대신 자신이 가입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질병 혹은 사고 시 의사의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병가 기간 중 고용주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의료보험사로부터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4.4 고용계약 종료 및 해고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해고 통지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보상금 지불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증명된 부도덕적 행위, 손실 혹은 피해
- 계약서상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에 2회 연속으로 월요일에 결근할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및 작업장의 정상적 가동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 고용주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 계약서상에 명시된 작업장에서 근무를 거부할 경우
- 작업장의 안전, 정상적 작동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 업무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파괴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계약종료확인서(Finiquito)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추후에 분쟁 발생 소지가 없다. 또한 기업의 구조 조정 시 생산성이 저하되었거나,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 회사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최근 1개월치 봉급을 곱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최대 11개월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 판사가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배의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종료확인서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퇴직금을 전달한다. 해고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더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4.5 쟁의 발생 시

쟁의 발생 시, 고용주는 대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으나 대체 근로자 1인당 4UF(한화 12만원 상당)를 노조 측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 칠레에서는 미달러 환율 이외에 매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UF(Unidad de Fomento)라는 가상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4.6 법정 최저임금

칠레 법(2008.7.1 개정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18~65세의 성인의 경우 월 159,000페소(약320달러)이며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최소 임금은 118,690페소(240달러)이다. 일반 가정에 고용된 경우 최저 임금은 통상 최저 임금의 75% 수준인 119,250(240달러)페소이다.

〈2008년 칠레 최저임금 현황〉

(단위: 페소, USD1=CLP650)

기간	비정규직 여성	18~65세	가정부	18세 이하, 65세 이상
2001.6~2002.5	70,562	105,500	79,125	81,661
2002.6~2003.6	72,326	111,200	83,400	83,703
2003.7~2004.6	75,219	115,648	86,736	87,051
2004.7~2005.6	78,050	120,000	90,000	90,327
2005.7~2006.6	82,889	127,500	95,625	95,927
2006.7~2007.6	87,697	135,000	101,250	101,491
2007.7~2008.6	92,897	144,000	108,000	107,759
2008.7~현재	102,558	159,000	119,250	118,690

자료: 칠레 노동부

4.7 사회 보장 제도

가. 의료 보험

칠레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이 의무로, 월 급여의 7%가 의무 의료보험료이다. 피 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가족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용주는 월 급여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원칙이다.

나. 연금 보험

칠레 연금보험은 민영화되어 있으나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연금보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반 공영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칠레 연금보험은 AFP라고 하며 고용인은 AFP가입 시, 5개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연금보험은 각종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것이 보통이며 각 상품은 투자 및 수익률에 따라 A~E 품목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30대 초반 미혼 고용인들의 경우 리스크와 수익성 모두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년층 및 퇴직 예정자들의 경우 가장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월 급여의 12.63%이며 그 외 개인의 상품선택에 따라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칠레의 조세법

5.1 개요

가. 칠레의 세법 체계

1) 칠레의 세법 체계

기업의 수익 대비 또는 법이 정한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공정한 세금부과원칙은 칠레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세금 부과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세제도를 이용한 재정수입 확대 및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 또는 신규법안 제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칠레의 주요 세금은 수입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및 석유 및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등이다.

2) 세금의 종류

□ 법인 소득세

법인,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외국회사의 지점(branch)의 소득은 다음 단계로 세금이 부과된다.

- 기본세율(first category tax): 회사에 의해 소득이 취득될 때 17%

- 추가세율(additional tax): 이익 배당시점(지점의 경우 해외 송금될 때) 35%

즉, 회사에 의해 취득 및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매월 잠정세금(Provisional Monthly Payments)을 납부한 후 매년 4월에 정산한다.

소득이 비거주자 파트너, 비거주자 주주에 의해 인출 및 배당 또는 해외 송금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 35%의 추가세율(additional tax)이 적용된다. 추가세 납세 의무자는 인출, 배당, 해외 송금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1단계 범주의 세금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세 산정 방법〉

구분	세율(%)
세전순소득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	100
기본 세금	17
추가 세금(100달러에 대한 35%)	35
세액공제	-17
순추가세	18
총 세금부담액	35
- 기본 세금	17
- 추가 세금	18

자료: 칠레 국세청

이자와 로열티 지급은 과세대상순소득에서 공제되나,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손실은 유보 이익으로 상쇄돼야 하며, 차감 잔액은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다음해 4월 중에 납세해야 한다. 거주자법인이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 지방세(Municipal Duty=Commercial License)

지방세는 영업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자본금의 0.25~0.5% 수준이며 최대 50만 달러를 초과 하지 못한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es)

양도소득세는 없다. 단, 주식, 광산, 사채 및 기타의 자산 매각으로부터 취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은 전 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간조세단위(Annual Tax Unit)에 기초한 표에 의하여 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서 지불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칠레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칠레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파트너십에 따른 외국인 파트너에는 그들이 참여한 대가로 얻는 이익에 대해 3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칠레기업이 비거주자 주주에 배당하는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미 납부한 기본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에 지급되는 상표권, 특허권, 공식, 기술적 지원, 기타 유사한 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칠레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외국은행 및 기관에 지급될 경우 4%가 적용된다.

□ 본사 파견 지사(Branch)근무요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지사장은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인정하여 신고 소득(주재 수당)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익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의 80~90%를 환급 받는다. 그러나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현지 채용 직원으로 간주되어 현지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예외 규정

칠레정부와 D.L 600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원할 경우 영업 개시해로부터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42%의 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Taxable Profit)	1,000
1종소득세-법인세(FCT) 17%	(170)
배당이익(Distributed Profits)	830
송금세(Tax on remittance) 25%	(250)
이익금(Profits to be remitted)	580

자료: 칠레 국세청

□ 기타 주요 조세

- 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생전에 행한 증여와 그의 사후의 재산의 이전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세율은 관련 금액과 고인의 수혜자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 사회보장세

월 급여의 약 20%(연금보험 12.39%, 의료보험 7%)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한다. 현지법인 또는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동산세

부동산의 경우 과세평가액(fiscal assessment)의 약 1.5%를 부동산세로 매년 납부해야 하며, 1년에 4회(분기별) 분할 납부한다.

- 인지세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금전신용계약서류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중 매월 0.1%에서 최고 1.2%의 인지세율이 적용된다. 단, 일람불 환어음인 경우 0.5%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 광업세(Mining Activity tax)

광산 채굴업체는 연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광업세가 부과된다.

〈 광업세 〉

연간 구리판매량(MTF기준)	세율
12,000MTF 이하	비과세
12,000~15,000MTF	0.5%
15,000~20,000MTF	1.0%
20,000~25,000MTF	1.5%
25,000~30,000MTF	2.0%
30,000~35,000MTF	2.5%
35,000~40,000MTF	3.0%
40,000~50,000MTF	4.5%
50,000MTF 이상	5.0%

자료: Cochilco

나. 세무연도

칠레는 일반적으로 Calendar Year를 세무연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세무회계의 원칙

칠레 세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무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칠레 세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들은 7가지 기본 서류를 반드시 업데이트 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의무 관리 대상 서류〉

1. Journal
 2. General Ledger
 3. Inventory and Balances book
 4. Wages and Salaries income tax-withholding ledger
 5. Purchases and sales ledgers(VAT Register)
 6. Register of goods in stock
 7. Register of retained taxable profits
-

만약 세금환급 시, 신청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칠레 국세청 당국은 전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을 평가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반드시 정확한 기록과 금액을 관리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라. 재무제표

칠레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아래의 기관들은 반드시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공개법인
 2. 은행 및 금융기관
 3. 보험사
 4. 조합 (Cooperatives)
 5. 민영연금보험기금 및 의료 기관
 6. 국영기업
 7. 증권업 및 뮤추얼 펀드
-

5.2 해외수입에 대한 과세

칠레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국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100%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반면, 외국기업의 경우 칠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칠레기업 및 칠레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칠레 소득으로 간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칠레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에는 동 이익금이 칠레로 유입될 경우 과세대상으로 편입되게 된다. 파트너십과 조인트벤처의 경우 그 자체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할당된 부분에 대해 각 파트너에게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미국의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취급하여 과세된다.

5.3 조세조약

칠레는 세계 각국과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이중과세 및 무과세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 칠레는 전 세계 22개국과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는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다.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의 경우 수입세, 법인세, 농촌개발세 및 주민세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와의 협약 내용도 비슷하다.



05 철수

1. 개요

칠레 진출 외국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철수를 시행한다. 첫째, 기업 경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둘째, 투자된 기업을 칠레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수하여 철수하는 경우, 셋째,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결정에 따른 철수이다.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와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위의 두 경우 모두 철수 절차가 주별로 다르다. 따라서 각 주정부의 재무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해체확인서나 외국법인철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법인은 주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받게 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를 당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수 방법 및 절차

2.1 현지법인의 철수

칠레 진출 외국기업의 철수는 국세청에 세금 납부필증과 법인 해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칠레 세무당국 및 등기소의 법인등록 삭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3주이다.

2.2. 철수에 따른 정리사항

철수 기업은 철수확정일 기준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 임금 및 기타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철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최대 30일 이전에 고용인들에게 철수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인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의 근무연수 곱하기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 내부적 정산뿐만 아니라 주재국 내에서 거래했던 기업과의 관계 청산절차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는 외상매입, 매출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이민과 비자

1. 행정절차

칠레의 이민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신변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이주가 허가된다.

칠레에 거주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경우 칠레정부는 보통 1년의 임시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동 비자 소지자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경찰서의 외국인 관리국(Policia Internacional)을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등기소(Servicio de Registro Civil e Identificación)에 등록증을 제출하면 외국인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1년이 되면 비자 만기일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부분, 비자가 있는 부분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증명서

- 마지막 3개월간의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위임장
- 가족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기타 이민국 요구서류

서류가 이상 없이 접수되면 외국인등록증 이면에 수속 중이란 뜻의 En Tramite라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는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통상 2~3개월 소요) 비자를 대신한다.

2. 이민과 비자의 종류

2.1 영주권 취득

칠레의 영주권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며 오히려 장기체류비자와 더 흡사하다. Permanencia Definitiva로 불리는 칠레 영주권은 보통 5년 기한이며 경우에 따라 발급 가능여부가 판단된다. 보통 칠레 영주권은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칠레 내 투자 및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발급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 칠레인과의 혼인, 영주권 보유자의 미성년 자녀 등은 특별한 조건 없이 발급가능대상이 된다.

2.2 이민 비자

가. 고용비자(Visa sujeta a contrato)

칠레 고용비자는 고용계약에 의해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발급대상이며 처음 고용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SC-1 비자를 발급받는다.

〈칠레 고용비자 종류〉

-
- [SC-1] VISA SUJETA A CONTRATO por primera vez.
(최초 고용비자 신청)
 - [SC-2] Prórroga de VISA SUJETA A CONTRATO.
(고용비자 연장신청)
 - [SC-3] VISA SUJETA A CONTRATO por cambio de empleador.
(고용주 변경에 따른 신규고용비자 신청)
 - [SC-4] Ratificación de VISA SUJETA A CONTRATO por cambio de Empleador(sin haber estampado Visa original).
(고용주 변경에 따른 기존 고용비자 변경 신청)
-

자료: 칠레 이민국

나. 임시비자

임시거주비자의 경우 칠레 내 일시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거주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칠레 임시거주비자 종류〉

- [Te-1] 칠레국적인과 연관이 있는 외국인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2] 임시거주 외국인의 자녀의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3]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및 친인척의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4] 구 영주권 보유자의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5] 종교인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6]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7] 외국인 투자자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 [Te-8] 전문직, 기술직 외국인비자 신청서
 - [Te-9] 임신여성 및 의료시술 목적 입국 외국인의 비자 신청서
 - [Te-11] 임시거주비자 연장 신청서
-

자료: 칠레 이민국

3. 정착 가이드

3.1 집 구하기

칠레에서는 주거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발급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집을 정하는 것이 현지 정착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경기활성화 및 건축 붐으로 중·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주택 공급은 원활한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임차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하철 및 대중교통 근접지역은 임차가 쉽지 않다. 현지 주택 임차는 보통 중개업체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보통 월세의 1/2을(나머지 1/2은 임차인이 부담) 중개료로 지불해야 한다.

집 계약 시 계약서 유첨물로 인벤토리(집의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경우에 따라 사진도 포함)가 포함되며, 통상 1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한국 지상사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은 Las Condes, Vitacura, Lo Barnechea 지역이다. 과거에는 Las Condes, Vitacura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국인 학교인 Nido de Aguila가 위치한 Lo Barnechea 지역에 아파트 및 고급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자녀의 통학에 편리한 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아파트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편이며, 치안 유지를 위해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된 단지형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칠레 거주 외국인 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주택 임차 시에는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2 계좌 개설

주민등록증, 비자, 집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칠레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은 상당히 고압적 자세를 갖고 있으며, 계좌 개설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 특히, 회사원인 경우 회사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확인한 급여명세서 등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보통 은행에서 의뢰한 신용 정보회사 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까지 확인한다.

칠레에서는 개인수표 사용이 보편적이며 은행계좌 신청 시 수표책을 신청,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표는 미 달러화, 페소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체크카드도 많이 사용하므로 같이 함께 신청 및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매달 은행에서 일정액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출해

가는데 수수료가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계좌 유지 수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다.

달러 계좌를 개설하려면 폐소화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기간(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이 지나야한다. 그러나 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와 잘 협의하면 동시에 개설해 주므로 설득해 보는 것이 좋다.

칠레에서는 수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약 151페소(약 300원)의 세금이 부과 된다. 대신 ATM기기를 이용한 타행 출금 시에도 세금 이외에 별도 은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3 전화

칠레의 경우 유선전화, 인터넷 등은 신청할 경우 대략 1주일 내에 설치된다. (통신사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다만,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 경쟁이 치열하므로 특정 국제전화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인터넷전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내 계좌로 통신비를 결제하면서(1개월에 약 46달러 선) 한국과 미국으로는 무료로 무제한 통화(단, 1회 최고 13분까지 통화 가능. 13분 초과 후 재다이얼로 계속 통화 연장 가능)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한국과의 통화량이 많을 경우 유용하다.

휴대폰은 선불제(Prepago)와 후불제(Plan) 두 종류가 있으며, 선불제의 경우, 기계 값을 지불하고 전화기를 구입한 후 SIM카드에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므로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하다. 후불제의 경우 신분증, 은행 계좌 보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개인 명의의 수표 사본 등)를 제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선불제의 요금이 후불제에 비해 더 비싼 편이지만, 선불제

사용자가 더 많다. GSM방식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자동 로밍되어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핸드폰을 꺼두면 된다.

3.4 비품 구입

칠레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제품 평균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고급품의 경우 수요가 많고 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전자제품·자동차 등은 인근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칠레에는 아직 팩토리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유통형태가 발달하지 않아 상품구입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을 통해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백화점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히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품 구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구 구입이다. 주요 사무용가구 브랜드인 Bash, Fernando Meier 등의 제품 가격은 한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사무용 가구 소요량이 많고 고급 가구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한국에서 비품을 구입해서 발송하는 비용(운송, 부가세, 통관비 포함)과 현지 구입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San Pablo 거리에 가면 중저가 사무용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밀집해있다.

3.5 자동차 구입

칠레는 환경오염 문제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가 타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귀국 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름 값이 비싼 편으로 1,600cc 이하의

소형차가 선호되며, 중대형에 비해 이들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길거리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산티아고 시내는 도로사정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산악지형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잦은 지방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4x4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3.6 자녀 교육여건

칠레의 주요 외국인 학교는 Nido de Aguilas로 주재원 자녀 대부분이 Nido de Aguilas에 다니고 있다. Nido de Aguilas(www.nido.cl)는 아메리칸 스쿨로 졸업생들이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하고 있지만 학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연 1만 2,000달러 수준, 기부금별도)

칠레의 교육제도는 유아(치)원(0~5세), 초등학교(6~13세), 중고등학교(14~17세), 대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진학률은 유아(치)원 81%, 초등학교 100%, 중고등학교 75%, 대학교 50% 등으로 문맹률이 5%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공립의 경우)이다. 그러나 공교육 수준이 높지는 않다.

칠레의 유명 대학으로는 국립대학인 Universidad de Chile와 Universidad Catolica를 꼽을 수 있다. 2개 명문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수업과정이 엄격하고 논문 심사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료 후 논문 통과까지 1~2년의 추가 기간을 할애한다.

3.7 병원

산티아고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Clinica las Condes

(www.clinicalascondes.cl)와 Clinica Alemana(www.alemana.cl)로 첨단 의료장비, 고급 의료진,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거래 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플랜별로 지정 병원과 할인폭, 의료 보험료가 달라진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발급해 주며, 병원 예약 시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사와 계약한(칠레에서는 ‘콘베니오가 있다’고 표현)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해야 보험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처음 가면 보험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보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은 병원 진료비 할인에 관한 사항이며, 약품 구입 시 할인을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약품 구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구입에 대해 특정 약국에서 70~90%의 약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의료 보험사로는 Banmedica, ING, Colmena 등이 있다.

3.8 국외여행

칠레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 대사관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할 것을 권한다. 미성년 자녀 동반 출국 시 이민국에서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가족증명서는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비용은 무료이고 가족 구성원 전원의 여권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 가면 발급이 빠르고, 증빙이 없을 경우 호주의 주민번호, 호적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호주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출국할 경우 ‘호주가 자녀를 데리고 여행할

책임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지참해야 한다.

최근 출입국 사무소에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출국자 가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항공스케줄을 변경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07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방안

1. 투자 유망분야

분야	세부 분야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호텔업 등
엔지니어링	인프라 건설 및 각종 BOT 건설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업	식품 및 목재가공

자료: KOTRA

2. 칠레 진출기업 성공사례

2.1 한국타이어

□ 기업개요

- 회사명: 한국타이어
- 설립년도: 2007.3. 칠레 사무소 개설
- 종업원수: 3인(현지)
- 업종: 타이어 제조/판매/수출
- 영업현황
 - 2007년 3월 1일 칠레 사무소(연락사무소) 공식 개설
 - DERCO가 현지 딜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Shop Branding, Sports Marketing 등 현지 마케팅활동에 중점

□ 영업현황

타이어는 자동차 수출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한-칠레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실제로 2001년부터 내리막을 그리던 한국산 자동차의 대 칠레 수출은 2004년 FTA 발효를 계기로 반등하였으며, 동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 칠레 승용차용 타이어 수출도 자동차 수출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주요 타이어 공급사인 동사의 시장도 지속 동반 확대되는 효과를 누렸으며 현재 칠레 주요 타이어 브랜드로 저가부터 고가시장 모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현지

파트너인 Derco사는 칠레 최대 자동차 및 관련 제품 전문 수입유통업체로 주재국 내 동사의 시장 확장에 핵심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칠레시장 진출성공의 키워드는 현지 유력 딜러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입증시키기도 하였다.

2.2 삼성전자

□ 기업개요

- 회사명: 삼성전자
- 설립년도: 1981년, 2006년 현지법인(마케팅법인) 전환
- 종업원수: 40명(현지법인 기준)
- 연간 대 칠레 수출: 2억 달러 수준(본사집계 FOB 선적기준)
 - 동 법인은 별도의 매출집계는 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제품별로 상이
- 업종: 전자제품 제조/판매/유통업
- 영업현황
 - 삼성전자 칠레법인은 1981년 칠레에 진출하였으며, 2004년에 FTA를 계기로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마케팅 법인으로 운영 면에서는 지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입·유통은 현지 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동 법인은 현지판매망 관리, 영업/판촉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

□ 영업현황

삼성전은 진출 초기부터 꾸준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칠레 시장에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FTA이후 첨단기술, 디자인 등 프라임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해 칠레 최고의 전자제품 브랜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젊은층 및 30대 비즈니스맨들에게 프리미엄 휴대폰 이미지가 매우 강하며 성공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일 만큼 칠레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이다.

현재 대 칠레시장 주요 판매제품은 LCD, PDP,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이며 일-칠레 FTA 이후 주요 경쟁분야인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라인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3 포스코 E&C

□ 기업개요

- 회사명: 포스코 E&C
- 설립년도: 2006년
- 종업원수: 30명(현지법인 기준)
- 연간 대 칠레 수출: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출 업체
- 업종: 건설 및 엔지니어링
- 영업현황
 - 포스코 E&C는 칠레 시장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계 건설기업으로 현재 AES Gener의 EPC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3기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영업현황

포스코 건설의 칠레 진출 시기는 2006년도로 현지 전력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초기 현지시장에 생소한 한국계 기업의 진출에 칠레 전력기업들은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큰 의심을 품었으며 실제로 발주처인 AES Gener 또한 100% Posco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 첫 프로젝트인 Ventanas 발전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현지 업계의 의심은 하나하나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며 오히려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단계별 공사기간에 맞춰 건설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해 점차 현지시장에서의 Name Value는 물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계속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졌으며 현재 포스코는 칠레시장에서 총 3개 프로젝트, 13억달러 규모의 공사수주를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칠레시장 진출은 현지기업의 한국 유력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험 및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세라젬(Ceragem)

□ 기업개요

- 회사명: 세라젬(Ceragem)
- 설립년도: 2005년
- 종업원수: 10명(현지법인 기준)
- 연간 대 칠레 수출: 63만달러 수준
- 업종: 의료기기
- 영업현황

-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세라젼은 2005년 칠레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산티아고 내 4개의 지점을 운영 중임.
- 세라젼 특유의 체험 마케팅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칠레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고객 감동서비스를 통해 현지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영업현황

한-칠레 FTA체결 직후 칠레 시장에 진출한 세라젼은 칠레를 중심으로 중남미 시장 확대 전략을 세울 만큼 칠레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진출하였다. 진출 초기 칠레 시장에 매우 생소한 제품으로 시장 침투가 어려웠으나 세라젼은 특유의 마케팅 기법인 무료 체험 서비스를 통해 칠레인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에 착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확한 A/S 및 고객 서비스가 부족한 칠레 시장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현지인들의 제품 평가와 더불어 기업이미지 제고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출 초 1개 지점으로 시작했던 세라젼은 현재 산티아고 시내에만 4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칠레는 물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시장에도 진출을 시작, 본격적인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3. 투자 진출 전략

가. 철저한 투자환경 조사 필수

칠레는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투자 및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정책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세금 및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한 규제는 유럽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제재조치도 매우 엄격하다. 또한 노동부문은 현지 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예기치 않은 법적 소송에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진출 초기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 활용

칠레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무차별, 무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및 분야별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대 칠레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숙지하고 동 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 협회 및 기타 단체들을 통한 투자진출 지원도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산티아고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역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단체 협조를 통해 현지 시장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칠레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남미 국가로 우리나라와 문화 및 언어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이다. 특히 영어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중남미 시장 진출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시장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스페인어 구사 가능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직원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현지 정착 및 마케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문화의 경우 중남미가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칠레 시장에 진출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칠레는 자국이 이뤄낸 현재의 국가수준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남미 일등국가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럽의 후손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인들과의 대화에서 칠레에 대한 비판이나 국가수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계약과 규정에 의한 직원 관리

칠레는 주변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계약 및 규정에 따른 이행도와 준법정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도 원칙대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이 계약과 규정에 유연한 사회를 생각하고 칠레 시장에 진출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직원 관리도 마찬가지로 채용 및 해고는 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직원의 근태관리 및 휴가, 급여에 대한 내용도 정부의 노동법 및 회사 내규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진출 초기, 직원관리가 소홀 또는 미숙할

경우 현지 고용인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 맺음말

칠레는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중남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정부와 국민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고용창출과 자국 산업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더 광범위한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정책 및 투자유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투자유치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 나라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시장진출 전략이 없다면 투자진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칠레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 투자진출 지원 기관과의 관계는 물론 투자 대상국의 정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정보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칠레 진출 후 구체적인 현지화 전략 및 영업 전략을 구축, 현지 지사가 모기업의 수익창출 수단이 아닌 칠레 기업으로 현지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든 조직운영에서 한국의 조직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현지 문화를 기준으로 한 기업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칠레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노력이야말로 투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함께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08 부록

1. 대칠레 투자 관련 유관기관 정보

- 1.1 법인설립 대행 및 컨설팅 업체
- 1.2 주요 지원기관
- 1.3 업종별 주요 협회

2. 칠레 내 주요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현황

1. 대 칠레 투자관련 유관기관 정보

1.1 법인설립 대행 및 컨설팅 업체

1	기업명	ACTITUDE, SERVICIOS EMPRESARIALES Y ASESORIAS LTDA
	주요 서비스	회계서비스, 세무관련 자문
	전화번호	56-2-3471000
	팩스번호	56-2-3471010
	홈페이지	www.actitude.com
	주소	Huerfanos 770, piso 4, Santiago
2	기업명	ALESSANDRI & COMPANIA
	주요 서비스	외국인투자, 기업 M&A, 금융법 등 전문
	전화번호	56-2-7876000
	팩스번호	56-2-7876062
	홈페이지	www.alessandri.clwww.alessandri.cl
	주소	El Regidor N° 66, piso 9, Las Condes
3	기업명	ALVAREZ, HINZPETER, JANA Y VALLE ABOGADOS
	주요 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융, 환경 관련 자문 전문
	전화번호	56-2-7577600
	팩스번호	56-2-7577601
	홈페이지	www.ahjv.clwww.ahjv.cl
	주소	Avda. Andres Bello 2711, oficina 802, Las Condes
4	기업명	ANINAT Y COMPANIA
	주요 서비스	광물자원, 상표, 기술, IT 부문 서비스
	전화번호	56-2-3352560
	팩스번호	56-2-3352580
	홈페이지	www.aninat.cl
	주소	Pedro de Valdivia 0193 oficina 91,Providencia

5	기업명	BARROS Y ERRAZURIZ
	주요 서비스	전력, SOC, 환경 부문 서비스 전문
	전화번호	56-2-3789777
	팩스번호	56-2-3620387
	홈페이지	www.bye.cl
	주소	Isidora Goyenechea 2939, piso 11, Las Condes
6	기업명	CAREY Y ALLIENDE
	주요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 서비스
	전화번호	56-2-6334000
	팩스번호	56-2-6334043
	홈페이지	www.careyallende.com
	주소	Miraflores 178 piso 21°, Santiago Centro
7	기업명	CLARO Y CIA.
	주요 서비스	환경, 지재권 부문 서비스
	전화번호	56-2-3673000
	팩스번호	56-2-3673003
	홈페이지	www.claro.cl
	주소	Av. Apoquindo 3721, piso 13, Las Condes
8	기업명	DELOITTE AND TOUCHE
	주요 서비스	에너지, 자원, IT부문 다국적 컨설팅 업체
	전화번호	56-2-2703244
	팩스번호	56-2-3749109
	홈페이지	www.deloitte.cl
	주소	Av. Providencia 1760, piso 7, Providencia
9	기업명	ESTUDIO JARA DEL FAVERO Y CIA.
	주요 서비스	외국인투자, 조세법, Concession 전문
	전화번호	56-2-3785244
	팩스번호	56-2-3785294
	홈페이지	www.jdf.cl
	주소	Avda. El Golf 99, oficina 401, Las Condes

10	기업명	ETCHEBERRY/RODRIGUEZ ABOGADOS
	주요 서비스	상법, 노동법, 부동산 부문 서비스
	전화번호	56-2-4999599
	팩스번호	56-2-4999490
	홈페이지	www.etcheberryrodriguez.com
11	주소	Moneda 970, Pisos 8 y 9, Santiago
	기업명	GRANT THORNTON SURLATINA AUDITORES LTDA
	주요 서비스	회계 전반 서비스 제공
	전화번호	56-2-2691737
	팩스번호	56-2-2691636
12	홈페이지	www.gtchile.cl
	주소	Alfredo Barros Errazuriz 1954, piso 18, Providencia
	기업명	GRASTY, QUINTANA, MAJLIS & CIA
	주요 서비스	환경, 어업, SOC 등
	전화번호	56-2-4144000
13	팩스번호	56-2-4144060
	홈페이지	www.gqmc.cl
	주소	Enrique Foster Sur 20, piso 9, Las Condes
	기업명	KPMG AUDITORES CONSULTORES LTDA
	주요 서비스	회계 전문, 산업분야 컨설팅 병행
14	전화번호	56-2-6311300
	팩스번호	56-2-6381865
	홈페이지	www.kpmg.cl
	주소	Monjitas 527, Piso 15°, Santiago Centro
	기업명	LANDA CONSULTORES AUDITORES LTDA
	주요 서비스	회계 전문
	전화번호	56-2-2034000
	팩스번호	56-2-2036841
	홈페이지	www.landa.cl
	주소	Av. Nueva Tajamar 481, Oficina 202, Torre Central, Las Condes

15	기업명	LARRAIN Y ASOCIADOS
	주요 서비스	금융, 부동산, 광산, 지재권 전문
	전화번호	56-2-4635800
	팩스번호	56-2-2031246
	홈페이지	www.lya.cl
	주소	Avda. El Bosque Sur 130, piso 12, Las Condes
16	기업명	MORALES, NOGUERA, VALDIVIESO & BESA
	주요 서비스	IT, 지재권, 기업합병 등
	전화번호	56-2-3340000
	팩스번호	56-2-3343152
	홈페이지	www.mnvn.cl
	주소	Av. Apoquindo 3001, piso 9° Las Condes
17	기업명	OSSANDON ABOGADOS
	주요 서비스	외국인투자 지원, 환경, 조세법 등
	전화번호	56-2-2336454
	팩스번호	56-2-2315495
	홈페이지	www.ossandonabogados.cl
	주소	Avda. Apoquindo 3039, piso 11, Las Condes
18	기업명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ORES, AUDITORES Y COMPANIA LTDA
	주요 서비스	다국적 컨설팅 업체
	전화번호	56-2-9400000
	팩스번호	56-2-9400504
	홈페이지	www.pwc.cl
	주소	Av. Andres Bello 2711 Piso 5, Torre de la Costanera, Las Condes
19	기업명	URENDA, RENCORET, ORREGO Y DORR
	주요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융, SOC 등
	전화번호	56-2-6559090
	팩스번호	56-2-6559148
	홈페이지	www.urod.cl
	주소	Av. Andres Bello 2711, piso 16° Las Condes

20	기업명	ERNST & YOUNG, SERVICIOS PROFESIONALES DE AUDITORIA Y ASESORIAS LTDA
	주요서비스	회계서비스 및 산업분야별 컨설팅
	전화번호	56-2-6761000
	팩스번호	56-2-6761010
	홈페이지	www.ey.com
	주소	Huérfanos770,pisos4° y5° SantiagoCentro,Santiago

1.2 주요 지원기관

◆ 투자 진흥기관 현황

1	기관명	CORFO
	전화번호	56-2-6318200
	홈페이지	www.corfo.cl www.corfo.cl
	주소	Moneda 921, Piso 2, Santiago, Chile
2	기관명	Comite de Inversiones Extranjeras (CINVER)
	전화번호	56-2-6984254
	팩스	56-2-6989476
	홈페이지	www.cinver.cl
	주소	Teatinos 120, Piso 10, Santiago, Chile
3	기관명	Ministerio de Economia
	전화번호	56-2-4733400
	팩스	56-2-6966305
	홈페이지	www.economia.cl
	주소	Teatinos 120, Piso 10, Santiago, Chile (외국인투자위원회와 동일)

4	기관명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전화번호	56-2-6794200
	홈페이지	www.minrel.cl
	주소	Catedral 1158 Piso 3, Santiago, Chile

자료: KOTRA

◆ 한국 내 칠레기관 현황

1	기관명	주한 칠레대사관
	전화번호	02-779-2610
	홈페이지	www.coreachile.org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고려대영각 타워 1081호
2	기관명	Prochile
	전화번호	02-779-2610
	홈페이지	www.coreachile.org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고려대영각 타워 1081호

1.4 주요 협회

◆ 일반협회

1	Asociación Nacional de Importadores(수입자 협회)
	Merced 230 Santiago - Chile
	전화: (56-2) 365 4000
	팩스: (56-2) 365 4001
	E-Mail: joyarzun@ccs.cl/asoimp@entelchile.net
2	Cámara de Comercio de Santiago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Monjitas 392 Santiago - Chile
	전화: (56-2) 360 7000
	팩스: (56-2) 633 0962
	홈페이지: www.ccs.cl
3	EuroChile (유로칠레)
	주소: Hernando de Aguirre 1549 Providencia antiago - Chile
	전화: (56-2) 787 8400
	팩스: (56-2) 274 1511
	홈페이지: www.eurochile.cl

◆ 농업

1	Agrupación de Agricultura Orgánica de Chile A.G. (칠레 유기농 협회)
	주소: Alonso de Córdova 6068, Depto 203, Las Condes, Santiago - Chile
	전화: (56-2) 958-22-35
	팩스: (56-2) 958 22 35
	홈페이지: www.agrupacionorganica.cl
2	Asociación de Exportadores de Chile(ASOEX) (칠레 농산물 수출자협회)
	주소: Cruz del Sur 133, 2º piso,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 472 4700
	팩스: (56-2) 206 4163
	홈페이지: www.asoex.cl/www.cffa.org
3	Asociación Gremial de Viveros Frutales (칠레 과일생산자 협회)
	주소: Av. Suecia 15 of. 62,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 2) 334 0212
	팩스: (56 2) 334 0212
	홈페이지: www.viverosfrutales.cl/index/index.asp
4	Asociación Nacional de Productores de Semillas (ANPROS)
	주소: Nueva Los Leones 07, Of. 1301 Providencia Santiago - Chile
	전화: (56-2) 335 3686
	팩스: (56-2) 335 3685
	홈페이지: www.anpros.cl
5	Sociedad Nacional de Agricultura (SNA)
	주소: Tenderini 187, Santiago - Chile
	전화: (56-2) 585 3300
	팩스: (56-2) 585 3371
	홈페이지: www.sna.cl

◆ 육류업

1	Asociación Chilena de la Carne A.G.(칠레육류협회)
	주소: Avda. Presidente Bulnes 216, Of. 302, Santiago, Chile
	전화: (56-2) 698 1529
	팩스: (56-2) 695 4923
	홈페이지: www.achic.cl
2	Asociación Gremial de Productores de Cerdos de Chile (ASPROCER)칠레 돼지고기 협회
	주소: Av. Isidora Goyenechea 2939, Of. 701, Las Condes, Santiago
	전화: (56-2) 231 3939
	팩스: (56-2) 335 1035
	홈페이지: www.asprocer.cl

◆ 식품가공업

1	Asociación de Empresasde Alimentos de Chile (CHILEALIMENTOS)
	주소: Av. Andrés Bello 2777, 1er Piso, Las Condes
	전화: (56-2) 203 3770
	팩스: (56-2) 203 3763
	홈페이지: www.chilealimentos.com
2	Asociación de Procesadores y Exportadores de Ciruelas Secas de Chile A.G
	주소: Eduardo Marquina 3937 Of. 404, Vitacura
	전화: (56 2) 953 5095
	팩스: (56 2) 953 5095
	홈페이지: www.chileandriedplums.cl/index.html

◆ 기타제조업

2. 칠레 내 주요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현황

1	Asociación Gremial de Industriales del Plástico(ASIPLA)
	주소: Av. Andrés Bello 2777, Of. 507 Las Condes Santiago
	전화: (56-2) 203 3342 / 203 3357
	팩스: (56-2) 203 3343
	홈페이지: www.asipla.cl
2	Asociación Gremial de Industriales Químicos de Chile(ASIQUM)
	주소: Av. Andrés Bello 2777, Of. 501, Las Condes, Santiago
	전화: (56-2) 203 3350
	팩스: (56-2) 203 3351
	홈페이지: www.asiquim.cl
3	Asociación Industrial de Laboratorios Farmacéuticos de Chile (ASILFA)
	주소: Av. Vitacura 2771, Of. 301, Las Condes, Santiago
	전화: (56-2) 213 9446 / 236 5343
	팩스: (56-2) 213 9445
	홈페이지: www.asilfa.cl
4	Cámara Chilena de la Construcción
	주소: Marchant Pereira 10, 3er.pisoProvidencia Santiago-Chile
	전화: (56-2) 376 3300
	팩스: (56-2) 371 3400
	홈페이지: www.cchc.cl/www.camaraconstruccion.cl
5	CámaradelaIndustriaCosméticadeChile
	주소: Av. Kennedy 5757, Of. 609, Torre Oriente Las Condes Santiago-Chile
	전화: (56-2) 951 0212 / 951 0242
	팩스: (56-2) 246 7230
	홈페이지: www.camaracosmetica.cl

6	CámaradelaIndustriaFarmacéuticadeChile
	주소: Av. Hernando de Aguirre 1981 Providencia Santiago-Chile
	전화: (56-2) 225 2959 / 225 2461
	팩스: (56-2) 205 2060
	홈페이지: www.cifchile.cl

2.1 ENEA산업단지

공단명	Enea			
홈페이지	www.enea.cl			
소재지	칠레 산티아고 외곽			
부지면적	1,100 Ha.			
공단성격	수도권 종합 산업단지			
입주시기	현재 운영 및 확장 중			
교통	산티아고 공항 및 주요 고속도로 인접			
전력	칠레 민간 배전사 Chilectra와 전력공급계약 체결			
용수	칠레 민간 상하수도 기업 Aguas Santiago Poniente 공급			
통신	칠레 3대 통신기업 Entel, Telefonica, GTD 서비스 공급			
외국기업 입주현황	DHL, American Airline, BASF construction & Chemicals, Fedex 등			
입주자격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우대조치	우대조건 없음			
무역관 의견	칠레 최대 소비지역인 수도권지역과의 접근성 및 주요 교통 인접지로 지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단임.			
공단 연락처	업체명	ENEA Parque de Negocios		
	주소	Americo Vespucio 100, Pudahuel, Santiago		
	전화	56-2-601-0601	담당	Matias Montalva

2.2 Coronel 산업단지

공단명	Parque Industrial Coronel	
홈페이지	www.parqueindustrialcoronel.cl	
소재지	칠레제2도시인 Concepcion 인근 항구지역에 위치	
부지면적	305 Ha.	
공단성격	산업단지	
입주 시기	현재 운영 및 확장 중	
교통	공항 및 철도,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위치	
전력	공급원활	
용수	공급원활	
통신	Telefonica, Entel	
입주자격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우대조치	우대조건 없음	
무역관 의견	항구 및 주요 소비도시와의 접근도 높음. 그러나 다른 공단에 비해 산티아고 지역과의 거리차이가 많은 것이 단점임.	
공단 연락처	업체명	Parque Industrial Coronel
	주소	Km 21, Autopistaonception
	전화	56-41-97-0400

2.3 La Casa de Piedra

공단명	La Casa de Piedra	
홈페이지	www.lacadadepiedra.cl	
소재지	산티아고 북부에 위치	
부지면적	330,000 S/M	
공단성격	산업단지	
입주 시기	현재 운영 및 확장 중	
교통	공항 및 주요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위치	
전력	공급원활	
용수	공급원활	
통신	인터넷 및 무선통신 시스템 완비	
입주자격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우대조치	우대조건 없음	
무역관 의견	칠레 최대 소비지역인 수도권지역과의 접근성 및 주요 교통 인접지로 지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단임.	
공단 연락처	업체명	La casa de Piedra
	주소	Ismael Valdes Vergara 382
	전화	56-2-738-6069